

2021년 연구보고서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효과 분석 방안

- 강원도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중심으로 -

2022. 4.



<http://kostat.go.kr/sri>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효과 분석 방안

- 강원도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중심으로 -

이동수 · 권태구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21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연구보고서」는 데이터과학 활용통계 승인 개선방안 연구, 통계주제별 통계지리정보 격차 서비스의 공표기준 산정 연구 등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감염병 위기 대응 경제·사회 측정지표 구축: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등 「정책통계」 관

련 연구, 데이터경제 측정기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초연구, 통계 및 행정자료를 이용한 고용효과 분석방안 등 「경제통계」 관련 연구, SDGs 이주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 데이터 가용성 연구 등 「SDGs 지표」 관련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이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통계 생산자의 통계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2년 4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가진

김 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강원도 일자리정책	4
제1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
제2절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9
제3장 기초자료 현황분석 및 방향	14
제1절 행정자료	14
제2절 조사자료	25
제3절 분석방향	31
제4장 고용정책 효과분석	41
제1절 자료구축 및 모형설정	41
제2절 분석결과	43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부 록	64

요 약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최근 지속되는 강원도 고용지표 상승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일자리정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및 강원도 내부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자료정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분석방법은 「사업장별 근로자 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였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강원도 일자리정책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0.2%~1.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질성 검토를 위한 서브그룹(sub-group) 분석에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근로자 규모별), 제조업·건설업(산업 그룹별) 사업장, 2010년 이전부터 존속하는 사업장(창설 시기별),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종사자 규모별)에 대한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인과관계 검토에서 처치군과 대조군을 강원도 경계지역 시·군(권역)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시·군별 접근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상실자의 평균 근무기간 증감에 의한 분석결과에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효율성이 낮고, 정책의 수혜자가 적은 사업(일자리 안심공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정책 효과가 높고, 수혜자(도민)가 많은 일자리 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 강원도 일자리정책, 사회보험료, 안심공제, 고용효과, 이중차분법

제 1 장

서 론

올림픽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개최지역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행사운영비 지출, 관광객 소비지출, 경기장 인프라 투자 지출, 교통망 확충 투자 지출,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 스포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효과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올림픽대회는 건설, 관광, 여가산업 부문에 많은 영향을 주어 대회를 통해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Preuss, 2004).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에 대한 고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행사 전 경기장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건립과 행사 종료 후 경기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고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스포츠 행사와 관련하여 일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하여도, 경기장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고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한 비용 조달로 인해 다른 곳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약해져서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행사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장 건설인력은 건설 기간이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행사 이후에 경기장 운영인력은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배경은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9일~2월 25일) 및 동계패럴림픽(2018년 3월 9일~3월 18일)을 개최하였는데, 동계올림픽 준비기간 및 행사 당시에는 기반시설 건설과 행사 운영 및 진행으로 강원도의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지역에 고용효과가 하락하고, 지역경제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을 시행하였다.

<표 1-1> 강원도 일자리 지원정책

구 분	시작 시점	사업 내용(지원대상, 기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년	- 1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자리 안심공제	2017년	- 중소기업 상용·정규직 근로자, 월 50만 원(5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2015년	- 청장년 경력단절 여성 신규 정규직 채용 시 월 100만 원 (6개월)

자료 : 강원도청

동계올림픽 이후, 2018년 강원도의 주요 고용지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9년은 역대 최고의 고용지표를 갱신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강원도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용효과가 맞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고용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고용효과의 영향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1-2> 전국 및 강원도의 취업자수와 고용률(증감)

구 분	취업자수				고용률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규모(천명)	증감(%)	규모(천명)	증감(%)	비율(%)	증감(%p)	비율(%)	증감(%p)
2015	741	2.8	26,178	1.1	57.9	1.0	60.5	-
2016	749	1.2	26,409	0.9	58.2	0.3	60.6	0.1
2017	790	5.4	26,725	1.2	61.0	2.8	60.8	0.2
2018	789	-0.1	26,822	0.4	60.7	-0.3	60.7	-0.1
2019	811	2.9	27,123	1.1	62.3	1.6	60.9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2019년)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강원도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용지표 상승 원인이 경기상황 변화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고용정책효과 및 강원도 차원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따른 고용효과인지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매년 예산투입이 필요한 고용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물론 고용지표 변화(상승)요인 파악에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다양한 다출처 자료(행정자료, 조사자료, 내부자료 등)의 활용으로 지역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따른 고용률 및 고용 질의 변화와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계획수립,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성과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구성에서 2장은 본 연구대상이 되는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개요, 대상(조건) 및 정책추진 성과를 고용정책 종류별로 정리하고, 3장은 강원도 고용 관련 기초분석 및 고용효과 분석방향을 정하는 단계로 고용 관련 행정자료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강원도 일자리정책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할 것인가를 선정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중차분법의 정의 및 사전연구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효율적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종류 및 선택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기초자료(패널자료) 구축에 대한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변수 내용)과 효과분석 결과를 작성하며,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일자리정책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

강원도 일자리정책

제1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추진개요

가. 배경

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17년 대비 '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표 2-1>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2013년~2018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 고
최저임금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인상률	6.1%	7.2%	7.1%	8.1%	7.3%	16.4%	
월급여액(천원)	1,015	1,088	1,166	1,260	1,352	1,573	
인상액		73천원	78천원	94천원	92천원	221천원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월급여액 추가 부담 5년간 평균 인상률에(7.4%) 따른 월급여액 추가 부담 ⇒ 사업주 9% 추가 부담							
	220,000원		100,000원		120,000원		

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 추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0천 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일부 감액), 건강보험료 경감(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50% 경감), 이외에도 강원도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결정하였다.

③ 2018년 동계올림픽 고용지표 유지

2018년(2~3월)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영향으로 상승한 고용지표가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경기 하락과 고용 후퇴가 예상되어 이를 위한 강원도의 독자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나. 목적

최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¹⁾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세 중소기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및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위축 방지 및 일자리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근로자 해고, 무급가죽 경영으로 전환 및 폐업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강원도 내 소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이 향후 노후 빈곤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폐업 후 안정적 재취업 활동 보장 등 퇴로안정망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다. 대상 및 조건(2020년 기준)

1) 10인 미만 사업장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도내 소재하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이다. 근로자 수(10명 미만) 판단 기준은 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이고, 개인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 단위이며, ②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③ 지원신청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① 월평균 보수액 215만 원 미만(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조건과 동일) 근로자이고,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준수해야 하는데,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하며, ③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태로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한다.

사업주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대상은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1) 2013년~2017년은 약 7% 정도 인상되었으나, 2018년에는 16.4% 인상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 국가 등 공공기관,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연금 및 건강보험료만 지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불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 기준으로 지원 제외대상은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근로자가 해당한다.

2)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소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로, 강원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강원도 내 소재하고, 동일인이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인 자영업자 사업주이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표 2-2>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국민연금 지원	고용보험 지원	산재보험 지원																						
지원 요건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 된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5만 원 미만 - 최저임금 120% 반영 -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 정부 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과 동일하게 설정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 - 소득금액 추계신고 대상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금액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1~7등급 중 본인 선택 - 2019. 7월부터 개업일 관련 가입제한 조건 폐지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 1~12등급 중 본인 선택 - 가입가능 업종이 제한적 * 정부에서 점차 확대방침																						
지원 내용	○ 국민연금 월보험료 납부금액 50% * 국민연금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과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468만 원이며, 천원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40~70% <table><tr><th>등급</th><th>지원비율</th><th>비고</th></tr><tr><td>1등급</td><td>40%</td><td rowspan="2">정부지원 50% (중기부)</td></tr><tr><td>2등급</td><td>40%</td></tr><tr><td>3등급</td><td>50%</td><td rowspan="2">정부지원 30% (중기부)</td></tr><tr><td>4등급</td><td>50%</td></tr><tr><td>5등급</td><td>70%</td><td></td></tr><tr><td>6등급</td><td>60%</td><td></td></tr><tr><td>7등급</td><td>50%</td><td></td></tr></table>	등급	지원비율	비고	1등급	40%	정부지원 50% (중기부)	2등급	40%	3등급	50%	정부지원 30% (중기부)	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50% - 등급별 월급여에 업종별 보험료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 - 1등급 2,004천 원부터 12등급 6,432천 원으로 단계별 구성 * 단, 업종별 보험료를 상이(음식점업 1.05%, 도소매 0.95%)
등급	지원비율	비고																							
1등급	40%	정부지원 50% (중기부)																							
2등급	40%																								
3등급	50%	정부지원 30% (중기부)																							
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라. 부정수급 조치

1) 10인 미만 사업장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인데, ① 거짓 신고, 구비서류의 거짓 작성 및 제출로 지원금 신청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강원도 및 시군, 관할 보험공단이 부정수급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환수 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동시 환수

2)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환수기준에 의거하여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① (전액 환수)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②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③ (잘못 지원된 금액) 그 밖에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다.

2. 추진성과

-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실시
 - 저임금 근로자의 1차 사회안전망 가입 유도로 고용시장 안정 체계 확립
 - 주민신청 편의를 위한 의견 수렴 ⇨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8종→3종 감축)
-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연간 198만 건 (33만 건×6종)

가. 공통분야

① 사회보험 지원사업 관련 3대 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18.4.6.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적인 보험료 지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3대 보험공단과의 협업을 추진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강원도·건강보험공단·국

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간 보험료 및 다양한 데이터 공유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우수 협업사례로 선정되었다.

② 신청서류 간소화: (현행) 8종 → (변경) 3종으로 감축

(현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2~6.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미제출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6.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	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③ 신청방법 확대: (현행) 방문 신청 → (변경)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찾아가는 현장 홍보요원 운영: 30명

개별 사업장 방문 사업 설명, 신청서 작성 안내 및 현장 접수를 실시했다.

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신청 사업장 지속적인 증가 및 대량 개인정보의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장 기본정보 관리, 정확한 지원금 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나.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 10인 미만 사업장

① 지원 신청자 증가

※ '18.상반기 10천 명 → '18.하반기 31천 명 → '19.하반기 44천 명

구 분	2018년	2019년(12월 기준)	2020년(목표)
신 청	11,622개소(31,162명)	16,715개소(44,307명)	14,000개소(35,000명)
실지원	11,029개소(27,410명)	14,559개소(31,718명)	

자료 : 강원도청

② 지원 사업장 중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65% 차지 → 영세업종 지원

③ 10인 미만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증가로 사회안전망 강화

구 분	'17.12월		'19.11월	증감
고용보험(사업장/근로자)	9,332개 / 22,200명	⇒	19,931개 / 60,050명	10,599개 / 37,850명
국민연금(사업장/근로자)	13,756개 / 27,571명		21,632개 / 46,922명	7,876개 / 19,351명

자료 : 강원도청

⇒ 지원효과 입소문, 현장 홍보요원 운영 등으로 신청 사업장 확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

2) 1인 자영업장

① 1인 자영업자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실시: '19. 3분기 기준 8,749명 신청

※ 국민연금 50%, 고용보험(최대 70%), 산재보험(50%) 지원

구 분	2018년	2019년(9월 기준)	2020년(목표)
신 청	-	8,749명	10,000명
실지원	-	5,924명	

자료 : 강원도청

② 2020년부터 연사업소득 금액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 현 8,749개 사업장 → 26,359개 사업장으로 지원 범위 확대 가능

제2절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1. 추진개요

가. 배경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비수도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획일화된 정책추진으로 권역 간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일자리 양과 질이 최하위 수준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도내 근로자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직이 심화되고 있고, 도내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과 지속적인 구인난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강원도는 일자리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형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구축이 필요하다.

나. 목적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기업 등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강원도 내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실직·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대상

1)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참여 기업(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③ 앞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참여 대상 기업 중에서 ① 지원 제외 업종(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타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④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제외한다.

2) 근로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가능 근로자는 안심공제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한다.

마찬가지로, 안심공제 가입을 제외하는 근로자는, ① 해당 기업의 대표자, ② 앞의 항목 ①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③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²⁾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⑤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2)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라. 기타 개요

- ① 지원기간 : 안심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 (만기 공제금 미수령 시 5년 연장 가능)
- ② 적립금액 : 매월 50만 원 (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도·시군 2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3천만 원 내외)을 근로자에게 지급
- ③ 적립방식 : 강원도에서 적립하는 지원금은 도비 전체를 별도 통장에 예치 및 관리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월납금은 각각 전용계좌(신용보증재단 명의, 가입자명 부기)에 월별 납부한다.
- ④ 지급방식 : 지급 시기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한다. 단,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은 기업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 ⑤ 운영기관 : 전문기관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데, '17년 가입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했고, '18년 가입분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한다.

2. 추진성과

가. 호응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제도는 매년 계획한 인원을 상회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은 신청(가입승인) 인원은 3,467명이고, 계약을 완료(철회 제외)한 인원은 3,318명이며, 이 중에서 3,036명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다.

<표 2-3> 연도별 가입현황(2017년~2019년)

구 분	목표인원	신청인원(기업수)		가입인원(기업수)		계약유지(기업수)	
계	5,250	8,026	(2,279)	6,332	(1,965)	5,461	(1,799)
2017	250	1,903	(298)	483	(38)	379	(36)
2018	2,000	2,712	(847)	2,531	(815)	2,046	(723)
2019	3,000	3,467	(1,134)	3,318	(1,112)	3,036	(1,040)

나. 가시화

① 안심공제 가입 기업의 이직률은 안정적 변화 및 하락 추세

※ 이직률(2019. 1분기) : (도 전체) 4.4 → 5.9% 상승 / (공제가입 기업) 1.5 → 1.4% 하락



<그림 2-1> 분기별 이직률 추이

② 이직률 하락에 따른 기업 교육훈련비 절감

③ 인력 역외유출 방지 효과

<표 2-4> 연도별 가입현황(2017년~2019년)

구 분	전국 경력이동 근로자수	경력이동 근로자수 (A)	도내이동 근로자수 (B)	도외유출 근로자수 (C)	도내유입 근로자수 (D)	도외 순유출 근로자수 (E=C-D)	도외 순유출 / 경력이동 (E/A)	도외 순유출 / 도내 이동 (E/B)
2016	486,397	15,226	8,504	3,275	3,447	- 172	-1.13%	-2.02%
2017	493,266	15,620	8,735	3,397	3,488	- 90	-0.58%	-1.03%
2018	522,936	17,083	9,476	3,677	3,930	- 254	-1.48%	-2.68%
2019	620,953	21,410	12,602	4,208	4,601	- 393	-1.84%	-3.12%

④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높음 : 근로자 87.0%, 사업주 81.2%

다. 복지서비스

21개 기관과 협약하여 공제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세 사업체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기업복지를 “일자리 공제조합”의 테두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건강검진(20~30%), 숙박시설(20~70%), 장례, 레저, 금융,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향후 기대성과

이직률 하락에 따른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절감³⁾되고, 우수인력의 역외유출 방지 효과⁴⁾가 있으며,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역량강화, 핵심인력 확보, 고용창출 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핵심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양성비용 인당 4,607만 원(중소기업연구원, 2014)

4) 1명 전출 시 연간 역외유출 경제효과 4,415만 원(한국고용정보원, 2017)

제 3 장

기초자료 현황분석 및 방향

제1절 행정자료

1.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가. 피보험자 및 사업장 변화

강원도 일자리정책 고용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는 매년(2010년~2019년) 12월(2020년은 6월) 기준으로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신규사업장 등과 같이 근로자가 0인 사업장은 제외한 결과이다.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9만 명으로 2019년 28만 명보다 7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1,390만 명의 2.1%를 차지(평균 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26만 명으로 2019년 825만 명보다 7천 명 증가하였고, 광역시는 737만 명으로 전년도 739만 명보다 1만 9천 명 감소하였으며, 도 지역은 653만 명으로 전년도 645만 명보다 7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고용보험) 권역별 연도별 피보험자 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0,129	10,675	11,152	11,571	11,913	12,346	12,637	12,941	13,413	13,841	13,899
수도권	5,943	6,304	6,591	6,824	7,017	7,275	7,503	7,726	8,017	8,250	8,257
광역시	5,523	5,815	6,069	6,271	6,459	6,689	6,832	6,978	7,207	7,391	7,372
도지역	4,606	4,860	5,083	5,300	5,455	5,657	5,805	5,963	6,206	6,450	6,527
강원도	204	211	222	230	235	244	251	259	271	285	292
(비중)	2.02	1.98	1.99	1.99	1.98	1.98	1.99	2.00	2.02	2.06	2.10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장 수는 4만 개로 2019년 3.8만 개보다 1.5천 개 증가하였으며, 전국 고용보험 사업장 수 147만 개의 2.7%를 차지(평균 2.6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0만 개로 2019년 78만 개보다 2만 개 증가하였고, 광역시는 70만 개로 전년도 68만 개보다 1만 6천개 증가하였으며, 도 지역은 78만 개로 전년도 75만 개보다 2만 3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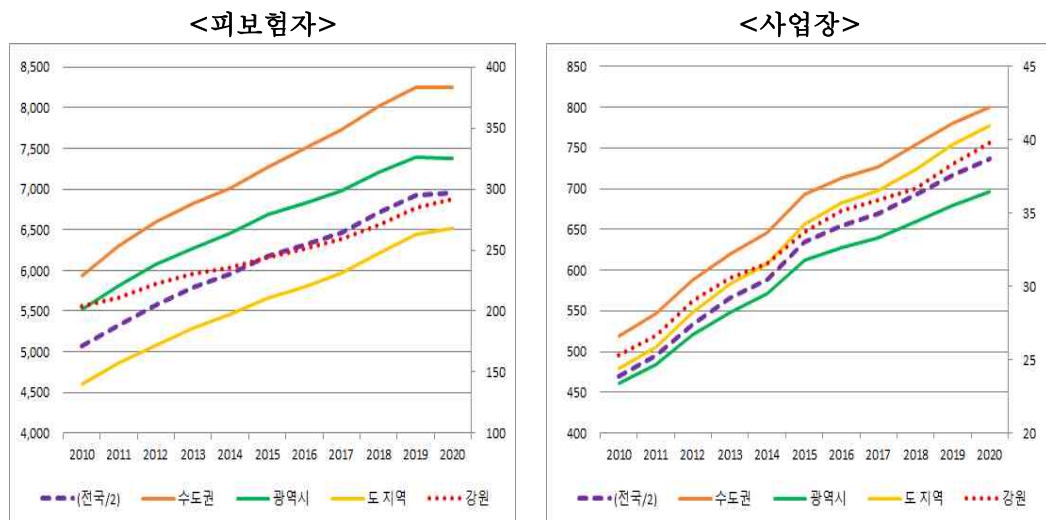
<표 3-2> (고용보험) 권역별 연도별 사업장 변화

(단위: 천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940	991	1,069	1,130	1,179	1,268	1,309	1,339	1,384	1,434	1,473
수도권	519	547	588	619	645	693	713	726	755	780	800
광역시	461	485	521	548	570	612	627	640	660	680	696
도지역	479	506	548	583	608	657	682	698	724	754	777
강원도	25	27	29	31	32	34	35	36	37	38	40
(비중)	2.70	2.70	2.72	2.71	2.68	2.66	2.69	2.68	2.65	2.67	2.70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전국 기울기와 강원도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피보험자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전국의 증가 기울기보다 완만한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비슷하거나 약하게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서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전국과 비슷하거나 미세하게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가입자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고용보험) 권역별 피보험자 및 사업장 변화

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20년 6월 기준 강원도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3만 5천 개로 2019년 3만 3천 개보다 1.3천 개 증가하였고, 강원도 전체 사업장 4만 개의 86.8%(평균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26만 개의 2.7%(평균 2.7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고용보험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6만 개로 2019년 122만 개보다 3만 9천 개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장 147만 개의 85.5%(평균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3>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전국 및 강원도) 변화

(단위: 천개, %)

구 분	전국				강원도				강원도 비중	
	전체	10인 미만	비중	증가율	전체	10인 미만	비중	증가율	전체	10인 미만
2010	940	776	82.6		25.3	21.2	83.7		2.70	2.73
2011	991	820	82.8	0.27	26.7	22.5	84.1	0.53	2.70	2.74
2012	1,069	894	83.7	1.02	29.1	24.7	84.9	0.98	2.72	2.76
2013	1,130	950	84.1	0.48	30.6	26.0	85.0	0.09	2.71	2.74
2014	1,179	993	84.3	0.26	31.6	27.2	86.1	1.32	2.68	2.74
2015	1,268	1,077	84.9	0.72	33.7	29.2	86.6	0.50	2.66	2.71
2016	1,309	1,112	84.9	0.06	35.2	30.5	86.7	0.17	2.69	2.74
2017	1,339	1,136	84.9	-0.07	35.9	31.0	86.4	-0.34	2.68	2.73
2018	1,384	1,176	85.0	0.14	36.7	31.7	86.6	0.17	2.65	2.70
2019	1,434	1,220	85.1	0.11	38.3	33.2	86.7	0.14	2.67	2.72
2020	1,473	1,259	85.5	0.46	39.8	34.5	86.8	0.10	2.70	2.74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기준 강원도 고용보험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9만 6천 명으로 2019년 9만 3천 명보다 2.2천 명 증가하였고, 강원도 전체 사업장의 피보험자 29만 2천 명의 32.8%(평균 3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피보험자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 348만 명의 2.1%(평균 2.0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고용보험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348만 명으로 2019년 344만 명보다 3만 3천 명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장 1,390만 명의 25.0%(평균 24.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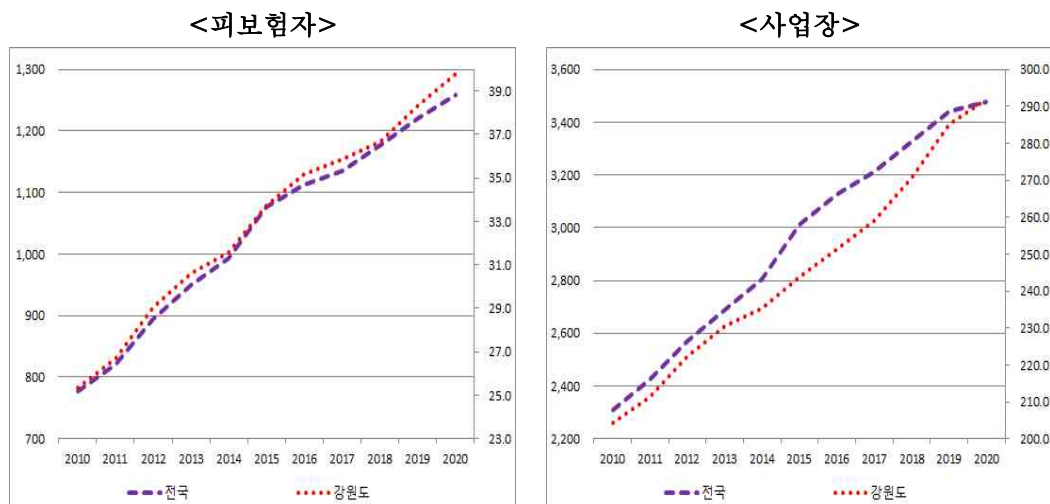
<표 3-4> (고용보험) 10인 미만 피보험자(전국 및 강원도) 변화

(단위: 천명, %)

구 분	전국				강원도				강원도 비중	
	전체	10인 미만	비중	증가율	전체	10인 미만	비중	증가율	전체	10인 미만
2010	10,129	2,311	22.8		204.2	63.4	31.1		2.02	2.75
2011	10,675	2,424	22.7	-0.47	211.3	66.3	31.4	1.06	1.98	2.74
2012	11,152	2,572	23.1	1.56	222.3	70.4	31.7	0.89	1.99	2.74
2013	11,571	2,688	23.2	0.73	230.5	72.6	31.5	-0.49	1.99	2.70
2014	11,913	2,806	23.6	1.40	235.3	76.1	32.3	2.58	1.98	2.71
2015	12,346	3,011	24.4	3.55	243.9	80.9	33.2	2.63	1.98	2.69
2016	12,637	3,126	24.7	1.43	251.4	84.5	33.6	1.29	1.99	2.70
2017	12,941	3,210	24.8	0.25	258.8	86.0	33.2	-1.17	2.00	2.68
2018	13,413	3,325	24.8	-0.05	270.6	88.9	32.8	-1.12	2.02	2.67
2019	13,841	3,443	24.9	0.35	285.2	93.4	32.7	-0.32	2.06	2.71
2020	13,899	3,476	25.0	0.55	291.8	95.6	32.8	0.06	2.10	2.75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아래의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그래프에서 2018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와 전국의 증가 기울기가 거의 일치하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약간 가파르게 나타나서 2018년 이후에 강원도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전국보다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가입자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 (고용보험) 10인 미만 피보험자 및 사업장 변화

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커버리지 변화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6만 개이고, 국민연금은 139만 개로 국민연금 사업장이 13만 개 많아서 커버리지((고용보험/국민연금)*100)는 110.0%이고, 비중은 2010년 84.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1만 개이고, 국민연금은 16만 개로 고용보험 사업장이 5만 개가 더 많고(커버리지 76.4%), 비중은 2010년 81.2%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전국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348만 명이고, 국민연금은 404만 명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56만 명 많아서 커버리지((고용보험/국민연금)*100)가 116.1%(2010년 95.8%에서 증가 추세)이고, 고용보험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1,042만 명이고, 국민연금은 796만 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46만 명 많아서 커버리지가 76.4%(2010년 83.8%에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표 3-5> 전국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커버리지

(단위: 천개, 천명, %)

구 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비중(국민연금/고용보험)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사 업 장	2010	940	776	164	792	659	133	84.3	84.9	81.2
	2011	991	820	170	866	728	138	87.4	88.8	81.1
	2012	1,069	894	175	951	811	140	89.0	90.7	80.3
	2013	1,130	950	180	-	-	-	-	-	-
	2014	1,179	993	185	1,068	924	144	90.6	93.0	77.6
	2015	1,268	1,077	192	1,185	1,038	147	93.4	96.4	76.7
	2016	1,309	1,112	197	1,290	1,137	154	98.5	102.2	77.9
	2017	1,339	1,136	202	1,367	1,210	157	102.1	106.5	77.5
	2018	1,384	1,176	208	1,443	1,282	161	104.3	109.0	77.5
	2019	1,434	1,220	214	1,515	1,351	165	105.7	110.7	77.0
	2020	1,473	1,259	214	1,549	1,386	163	105.2	110.1	76.4
근 로 자	2010	10,129	2,311	7,819	8,770	2,215	6,556	86.6	95.8	83.8
	2011	10,675	2,424	8,251	9,279	2,384	6,896	86.9	98.3	83.6
	2012	11,152	2,572	8,581	9,675	2,588	7,087	86.8	100.6	82.6
	2013	11,571	2,688	8,883	-	-	-	-	-	-
	2014	11,913	2,806	9,107	10,162	2,859	7,303	85.3	101.9	80.2
	2015	12,346	3,011	9,335	10,551	3,163	7,388	85.5	105.0	79.1
	2016	12,637	3,126	9,511	10,987	3,432	7,555	86.9	109.8	79.4
	2017	12,941	3,210	9,732	11,285	3,607	7,678	87.2	112.4	78.9
	2018	13,413	3,325	10,088	11,662	3,813	7,848	86.9	114.7	77.8
	2019	13,841	3,443	10,398	12,012	3,988	8,023	86.8	115.8	77.2
	2020	13,899	3,476	10,423	11,996	4,035	7,961	86.3	116.1	76.4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2020년 6월 강원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3만 5천 개이고, 국민연금은 3만 8천개로 국민연금 사업장이 3천 개 많아서 커버리지((고용보험/국민연금)*100)는 109.0%이고, 비중은 2010년 84.9%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10인 이상 사업장 수는 7.4천 개이고, 국민연금은 3.5천 개로 고용보험 사업장이 3.9천 개 많고(커버리지 47.9%), 비중은 2010년 59.6%부터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2020년 강원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9만 6천만 명이고, 국민연금은 10만 7천 명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1만 1천명 많아서 커버리지가 111.6%(2010년 94.2%에서 증가 추세)이고, 고용보험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19만 6천 명이고, 국민연금은 15만 3천 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만 3천 명 많아서 커버리지가 77.9%(2010년 90.6%에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표 3-6> 강원도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커버리지

(단위: 천개, 천명, %)

구 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비중(국민연금/고용보험)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10인 이상
사 업 장	2010	25.3	21.2	5.5	21.3	18.0	3.3	84.0	84.9	59.6
	2011	26.7	22.5	5.8	22.5	19.2	3.2	84.1	85.5	56.3
	2012	29.1	24.7	6.0	24.1	20.9	3.3	83.1	84.6	54.6
	2013	30.6	26.0	6.2	-	-	-	-	-	-
	2014	31.6	27.2	6.3	27.6	24.4	3.2	87.4	89.6	50.8
	2015	33.7	29.2	6.6	30.4	27.1	3.3	90.3	93.0	50.2
	2016	35.2	30.5	6.7	33.4	29.9	3.4	94.8	98.1	50.9
	2017	35.9	31.0	6.9	35.3	31.8	3.5	98.3	102.6	49.9
	2018	36.7	31.7	7.1	37.5	34.1	3.5	102.3	107.3	48.7
	2019	38.3	33.2	7.3	39.9	36.4	3.5	104.1	109.5	48.4
	2020	39.8	34.5	7.4	41.2	37.7	3.5	103.5	109.0	47.9
근 로 자	2010	204.2	63.4	140.8	187.3	59.7	127.5	91.7	94.2	90.6
	2011	211.3	66.3	145.0	193.2	62.1	131.1	91.4	93.6	90.4
	2012	222.3	70.4	151.9	200.3	65.7	134.6	90.1	93.3	88.6
	2013	230.5	72.6	157.8	-	-	-	-	-	-
	2014	235.3	76.1	159.3	216.1	73.6	142.6	91.8	96.7	89.5
	2015	243.9	80.9	163.0	227.0	80.6	146.4	93.1	99.6	89.8
	2016	251.4	84.5	166.9	235.0	87.3	147.6	93.5	103.4	88.4
	2017	258.8	86.0	172.9	241.3	91.2	150.1	93.2	106.1	86.8
	2018	270.6	88.9	181.7	251.6	97.8	153.8	93.0	110.1	84.6
	2019	285.2	93.4	191.8	258.9	104.1	154.8	90.8	111.5	80.7
	2020	291.8	95.6	196.2	259.5	106.7	152.8	88.9	111.6	77.9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가.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및 가입자 변동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자료에서, 2013년 기준 가입 사업장 수 자료가 공백인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국민연금 2020년 6월 기준으로 강원도(전국 자료는 부록 참조)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수는 4만 1천 개로 전년 4만 개보다 1.3천 개 증가(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G(도매 및 소매업)이 1만 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I(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났다.

<표 3-7> (국민연금) 강원도 산업대분류별 연도별 사업장 변화

(단위: 천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	21.28	22.46	24.13	-	27.59	30.43	33.36	35.30	37.51	39.91	41.20
A	0.29	0.32	0.38	-	0.44	0.51	0.58	0.62	0.67	0.69	0.77
B	0.15	0.14	0.13	-	0.11	0.11	0.11	0.12	0.12	0.11	0.11
C	2.32	2.40	2.56	-	2.81	3.01	3.23	3.34	3.52	3.65	3.72
D	0.02	0.02	0.02	-	0.03	0.03	0.04	0.05	0.07	0.08	0.08
E	0.24	0.24	0.24	-	0.23	0.23	0.25	0.25	0.26	0.28	0.29
F	4.32	4.43	4.54	-	4.81	5.01	5.44	5.63	6.00	6.74	7.05
G	5.15	5.53	6.11	-	7.05	7.90	8.59	9.05	9.51	9.86	9.99
H	0.62	0.63	0.66	-	0.72	0.78	0.81	0.85	0.90	0.90	0.92
I	1.74	1.94	2.43	-	3.74	4.67	5.41	5.90	6.56	7.22	7.40
J	0.27	0.28	0.29	-	0.32	0.34	0.39	0.42	0.48	0.51	0.52
K	0.24	0.24	0.24	-	0.24	0.24	0.26	0.27	0.28	0.28	0.29
L	1.26	1.38	1.49	-	1.58	1.68	1.87	2.06	2.05	2.14	2.51
M	1.16	1.23	1.27	-	1.40	1.49	1.61	1.74	1.84	1.94	1.99
N	0.72	0.77	0.77	-	0.81	0.89	0.98	1.06	1.08	1.15	1.19
O	-	-	-	-	-	-	-	-	-	-	-
P	0.45	0.46	0.48	-	0.56	0.61	0.65	0.70	0.80	0.88	0.89
Q	1.37	1.41	1.43	-	1.45	1.48	1.50	1.53	1.56	1.58	1.59
R	0.17	0.19	0.20	-	0.24	0.31	0.39	0.43	0.47	0.53	0.54
S	0.81	0.84	0.89	-	1.06	1.14	1.25	1.28	1.34	1.37	1.35
T	0.00	0.00	-	-	0.00	0.00	-	-	-	-	-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 산업대분류별 가입자 수는 25만 9천 명으로 2019년 25만 9천 명보다 6백 명 증가(전년 대비 0.6% 증가)하여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C(제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G(도매 및 소매업), F(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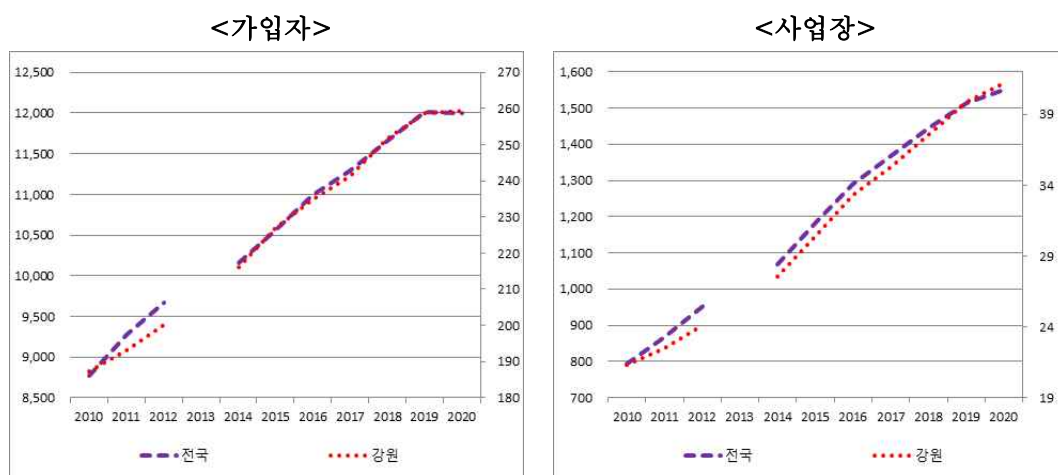
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민연금) 강원도 산업대분류별 연도별 가입자 변화

(단위: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	187.29	193.18	200.28	-	216.12	226.99	234.96	241.33	251.61	258.88	259.47
A	1.49	1.46	1.67	-	1.71	1.80	1.96	2.01	2.12	2.06	2.48
B	4.73	4.47	4.32	-	3.96	3.78	3.77	3.43	3.35	3.15	3.05
C	31.54	31.32	32.37	-	34.08	35.07	36.29	36.88	37.35	37.04	36.94
D	0.17	0.23	0.28	-	0.38	0.37	0.39	0.45	0.46	0.47	0.50
E	1.56	1.60	1.59	-	1.43	1.46	1.54	1.48	1.57	1.66	1.64
F	27.44	27.07	26.78	-	29.21	30.47	29.36	28.57	28.92	32.82	34.29
G	20.43	21.68	23.67	-	26.63	29.12	31.40	32.59	34.84	35.85	36.22
H	8.96	8.71	8.46	-	8.37	8.33	8.24	7.95	7.84	7.76	7.43
I	7.05	8.40	9.57	-	12.83	15.89	18.30	19.46	21.26	23.32	22.81
J	3.20	3.35	3.53	-	3.24	3.14	3.35	3.42	3.70	3.90	3.94
K	17.73	18.93	19.33	-	19.23	19.39	20.34	21.33	22.17	23.27	22.77
L	12.69	12.59	13.90	-	18.27	19.33	19.89	20.85	22.02	23.10	23.58
M	13.55	14.74	15.57	-	16.72	18.13	18.82	20.01	22.12	19.72	20.12
N	9.63	9.99	9.60	-	9.55	9.45	9.93	10.46	10.41	10.42	9.64
O	-	-	-	-	-	-	-	-	-	-	-
P	1.81	1.62	1.73	-	1.90	2.01	2.12	2.23	2.55	2.84	2.87
Q	13.46	13.95	14.22	-	15.19	15.58	15.14	15.43	15.92	16.26	16.39
R	6.83	7.99	8.47	-	8.22	8.29	8.49	8.94	9.15	9.37	9.03
S	5.03	5.10	5.23	-	5.21	5.42	5.65	5.85	5.89	5.89	5.79
T	0.00	0.00	-	-	0.00	0.00	-	-	-	-	-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그림 3-3>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 변화

위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그래프에서 2014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전국의 증가 기울기보다 완만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 기울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 기울기가 비슷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약간 높게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의 가입자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가입자 변동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39만 개로 2019년 135만 개보다 3만 5천 개(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장 155만 개의 89.5%(평균 87.1%)를 차지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자 수는 404만 명으로 2019년 399만 명보다 4만 6천 명(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전체 가입자 수 1,197만 명의 33.6%(평균 29.9%)를 차지하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9> (국민연금) 10인 미만 사업장(전국) 변화

(단위: 천개, 천명, %)

구 분	사업장				가입자			
	전체	10인 미만	(비중)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비중)	10인 이상
2010	792	659	83.2	133	8,770	2,215	25.3	6,556
2011	866	728	84.1	138	9,279	2,384	25.7	6,896
2012	951	811	85.3	140	9,675	2,588	26.8	7,087
2013								
2014	1,068	924	86.5	144	10,162	2,859	28.1	7,303
2015	1,185	1,038	87.6	147	10,551	3,163	30.0	7,388
2016	1,290	1,137	88.1	154	10,987	3,432	31.2	7,555
2017	1,367	1,210	88.5	157	11,285	3,607	32.0	7,678
2018	1,443	1,282	88.9	161	11,662	3,813	32.7	7,848
2019	1,515	1,351	89.1	165	12,012	3,988	33.2	8,023
2020	1,549	1,386	89.5	163	11,996	4,035	33.6	7,961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국민연금 가입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3만 8천 개로 2019년 3만 6천 개보다 1.3천 개(전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장 4만 1천 개의 91.4%(평균 88.7%)를 차지하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자 수는 10만 7천 명으로 2019년 10만 4천 명보다 2.6천 명(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전체 가입자수 26만 명의 41.1%(평균 36.2%)를 차지하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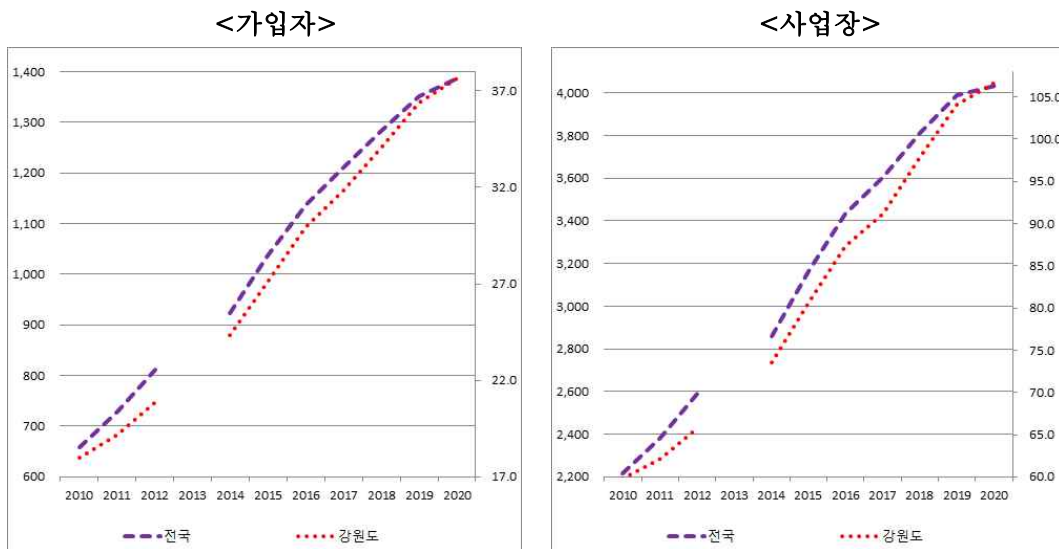
<표 3-10> (국민연금) 10인 미만 사업장(강원도) 변화

(단위: 천개, 천명, %)

구 분	사업장				가입자			
	전체	10인 미만 (비중)	10인 이상		전체	10인 미만 (비중)	10인 이상	
2010	21.3	18.0	84.6	3.3	187.3	59.7	31.9	127.5
2011	22.5	19.2	85.5	3.2	193.2	62.1	32.2	131.1
2012	24.1	20.9	86.5	3.3	200.3	65.7	32.8	134.6
2013								
2014	27.6	24.4	88.3	3.2	216.1	73.6	34.0	142.6
2015	30.4	27.1	89.2	3.3	227.0	80.6	35.5	146.4
2016	33.4	29.9	89.7	3.4	235.0	87.3	37.2	147.6
2017	35.3	31.8	90.2	3.5	241.3	91.2	37.8	150.1
2018	37.5	34.1	90.8	3.5	251.6	97.8	38.9	153.8
2019	39.9	36.4	91.2	3.5	258.9	104.1	40.2	154.8
2020	41.2	37.7	91.4	3.5	259.5	106.7	41.1	152.8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아래의 국민연금 10인 미만 사업장과 가입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입자 그래프에서 2018년 이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약간 가파르게 나타나서 2018년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의 그래프도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증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국민연금) 10인 미만 가입자 및 사업장 변화

다. 산업그룹별 사업장 및 가입자 변동

국민연금의 사업장 및 가입자의 산업대분류를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제조·건설업⁵⁾, 서비스업⁶⁾, 기타 산업⁷⁾)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산업그룹별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155만 개로 2019년 152만 개보다 3만 4천 개(전년 대비 2.2%) 증가하였고, 산업그룹별 사업장은 서비스업이 81만 개(전체 52.1% 차지)로 전년보다 1만 4천 개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0년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1,200만 명으로 2019년 1,201만 명보다 1만 6천 명(-0.1%) 감소하였고, 산업그룹별로는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이 437만 명(전체 36.4% 차지)으로 전년 대비 2만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민연금) 전국 산업그룹별 사업장 및 가입자 변화

(단위: 천개,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장 계	792.0	866.1	951.3		1,067.6	1,184.6	1,290.2	1,366.9	1,443.1	1,515.3	1,549.2
제조건설	273.0	291.5	307.1		323.0	345.1	369.0	386.6	404.8	422.9	431.2
(비중)	34.5	33.7	32.3		30.3	29.1	28.6	28.3	28.0	27.9	27.8
서비스업	356.1	396.7	453.5		537.2	614.1	672.8	713.2	756.1	794.0	807.8
(비중)	45.0	45.8	47.7		50.3	51.8	52.1	52.2	52.4	52.4	52.1
이외 기타	162.9	177.9	190.7		207.5	225.4	248.3	267.1	282.3	298.3	310.0
(비중)	20.6	20.5	20.0		19.4	19.0	19.2	19.5	19.6	19.7	20.0
가입자 계	8,770	9,279	9,675		10,162	10,551	10,987	11,285	11,662	12,012	11,996
제조건설	3,669.6	3,820.9	3,906.8		3,995.6	4,050.6	4,143.6	4,225.4	4,271.9	4,360.8	4,331.4
(비중)	41.8	41.2	40.4		39.3	38.4	37.7	37.4	36.6	36.3	36.1
서비스업	2,550.9	2,785.2	3,000.6		3,335.4	3,597.2	3,820.9	3,973.4	4,198.8	4,387.6	4,366.3
(비중)	29.1	30.0	31.0		32.8	34.1	34.8	35.2	36.0	36.5	36.4
이외 기타	2,549.9	2,673.4	2,767.3		2,830.6	2,903.3	3,022.8	3,086.7	3,191.3	3,262.7	3,295.7
(비중)	29.1	28.8	28.6		27.9	27.5	27.5	27.4	27.4	27.2	27.5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5) 제조업(C), 건설업(F)

6) 도매 및 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7)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T)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4만 1천 개로 2019년 4만 개보다 1.3천 개 증가하였고, 산업그룹별 사업장은 서비스업이 2만 3천 개(전체 55.1% 차지)로 전년 대비 3백 개(1.5%)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0년 강원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5만 9천 명으로 2019년 25만 9천 명보다 6백 명 증가한 반면에, 산업그룹별로는 서비스업이 10만 1천 명(전체 38.7% 차지)으로 전년 10만 1천 명보다 7백 명(-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국민연금) 강원도 산업그룹별 사업장 및 가입자 변화

(천개,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장 계	21.28	22.46	24.13		27.59	30.43	33.36	35.30	37.51	39.91	41.20
제조건설	6.63	6.84	7.10		7.62	8.02	8.66	8.96	9.53	10.39	10.77
(비중)	31.2	30.4	29.4		27.6	26.3	26.0	25.4	25.4	26.0	26.1
서비스업	10.31	11.00	12.20		14.81	16.89	18.61	19.74	21.14	22.34	22.68
(비중)	48.5	49.0	50.6		53.7	55.5	55.8	55.9	56.4	56.0	55.1
이외 기타	4.34	4.62	4.83		5.16	5.52	6.08	6.60	6.84	7.18	7.74
(비중)	20.4	20.6	20.0		18.7	18.1	18.2	18.7	18.2	18.0	18.8
가입자 계	187.29	193.18	200.28		216.12	226.99	234.96	241.33	251.61	258.88	259.47
제조건설	58.97	58.39	59.14		63.29	65.54	65.65	65.44	66.27	69.87	71.23
(비중)	31.5	30.2	29.5		29.3	28.9	27.9	27.1	26.3	27.0	27.5
서비스업	63.56	67.45	71.36		78.34	84.63	89.33	92.45	97.44	101.27	100.53
(비중)	33.9	34.9	35.6		36.2	37.3	38.0	38.3	38.7	39.1	38.7
이외 기타	64.75	67.34	69.78		74.48	76.83	79.99	83.44	87.91	87.74	87.71
(비중)	34.6	34.9	34.8		34.5	33.8	34.0	34.6	34.9	33.9	33.8

참고 : 통계청 행정자료(국민연금공단)

제2절 조사자료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472만 명으로 2019년 4,450만 명보다 22만 명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2,799만 명으로 전년 2,817만 명보다 19만 명(-0.7%)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는 2,680만 명으로 2019년 2,712만 명보다 32만 명(-1.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고용률⁸⁾은 2019년 60.9%에서 2020년 59.9%로 -0.1%p 감소하였고, 실업률⁹⁾은 2019년 3.8%에서 2020

8)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년 4.3%로 0.5%P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상반기 강원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으로 2019년 130만 명보다 3천 명 증가하였는데, 강원도의 경제활동인구는 82만 명으로 2019년 84만 명보다 1만 6천 명(-1.9%)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2019년 81만 1천 명보다 2만 2천 명(-2.8%)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2019년 62.3%에서 2020년 60.4%로 -1.9%P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19년 3.6%에서 2020년 4.4%로 0.8%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단위: 천명, %, %P)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인구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비율	증감	비율	증감
2010	40,825	24,956		24,033		58.9		3.7	
2011	41,387	25,389	1.7	24,527	2.1	59.3	0.4	3.4	-0.3
2012	41,857	25,781	1.5	24,955	1.7	59.6	0.3	3.2	-0.2
2013	42,304	26,108	1.3	25,299	1.4	59.8	0.2	3.1	-0.1
2014	42,795	26,836	2.8	25,897	2.4	60.5	0.7	3.5	0.4
2015	43,239	27,153	1.2	26,178	1.1	60.5	-	3.6	0.1
2016	43,606	27,418	1.0	26,409	0.9	60.6	0.1	3.7	0.1
2017	43,931	27,748	1.2	26,725	1.2	60.8	0.2	3.7	-
2018	44,182	27,895	0.5	26,822	0.4	60.7	-0.1	3.8	0.1
2019	44,504	28,186	1.0	27,123	1.1	60.9	0.2	3.8	-
2020(1/2)	44,722	27,993	-0.7	26,799	-1.2	59.9	-1.0	4.3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14> (경제활동인구조사) 강원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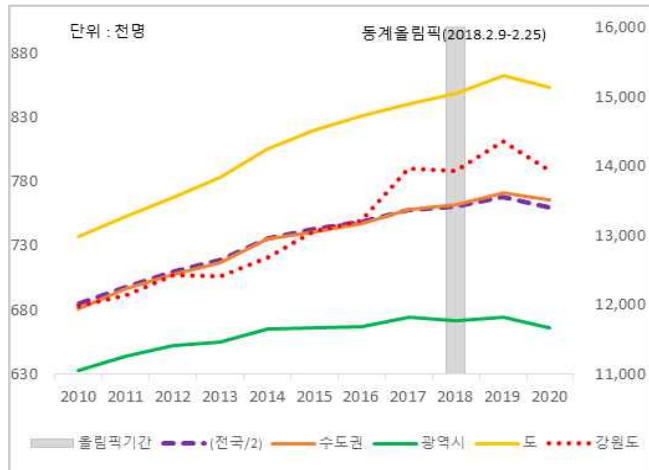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인구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비율	증감	비율	증감
2010	1,220	701		683		56.0		2.6	
2011	1,230	707	0.8	692	1.2	56.2	0.2	2.2	-0.4
2012	1,243	725	2.5	707	2.3	56.9	0.7	2.5	0.3
2013	1,254	723	-0.4	706	-0.2	56.3	-0.6	2.3	-0.2
2014	1,267	743	2.9	721	2.1	56.9	0.6	3.1	0.8
2015	1,280	765	3.0	741	2.8	57.9	1.0	3.2	0.1
2016	1,288	771	0.7	749	1.2	58.2	0.3	2.8	-0.4
2017	1,295	811	5.2	790	5.4	61.0	2.8	2.6	-0.2
2018	1,300	812	0.2	789	-0.1	60.7	-0.3	2.9	0.3
2019	1,303	841	3.6	811	2.9	62.3	1.6	3.6	0.7
2020(1/2)	1,306	825	-1.9	789	-2.8	60.4	-1.9	4.4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가.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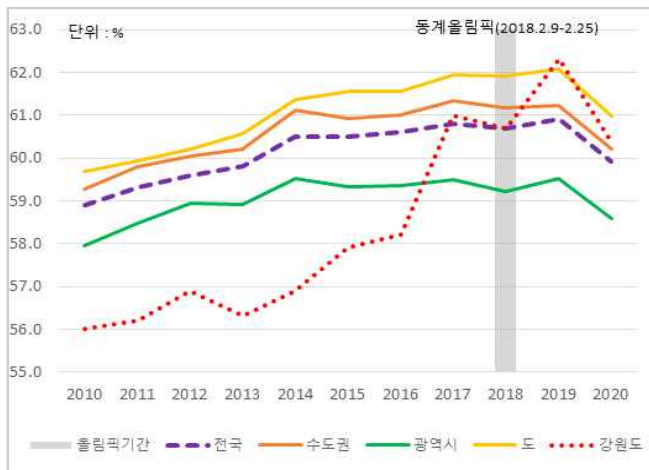
2010년~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20(1/2)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시는 2010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도 지역은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권역이지만 2020년에 -1.0%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증감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과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0.1%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파악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2010~2019년)

나. 고용률

전국적으로 2010년~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은 2019년까지 대체로 증가(2018년에 소폭 감소)하다가 2020년에 감소(-1.6%)하였다. 권역별로 광역시는 2010년부터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도 지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20년에 감소(-1.8%)하였고, 수도권은 전국과 유사하게 2014년부터 전년도와 비슷한 고용률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감소(-1.7%)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은 2019년까지 증가(2013년 -1.1%, 2018년 -0.5% 감소)하다가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3.1%)하여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파악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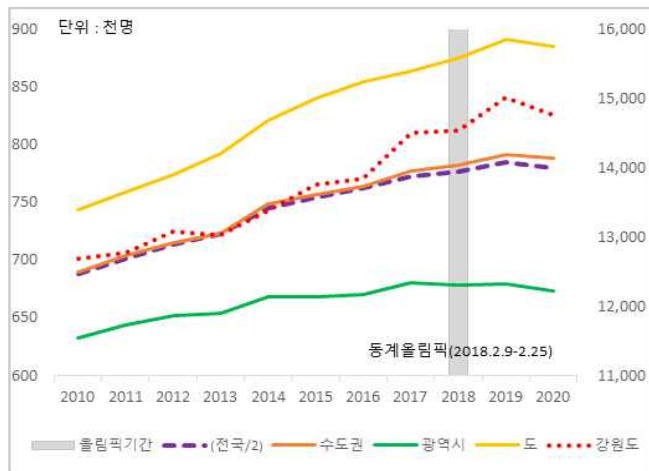


<그림 3-6>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2010~2019년)

을 보여주고 있다.

다.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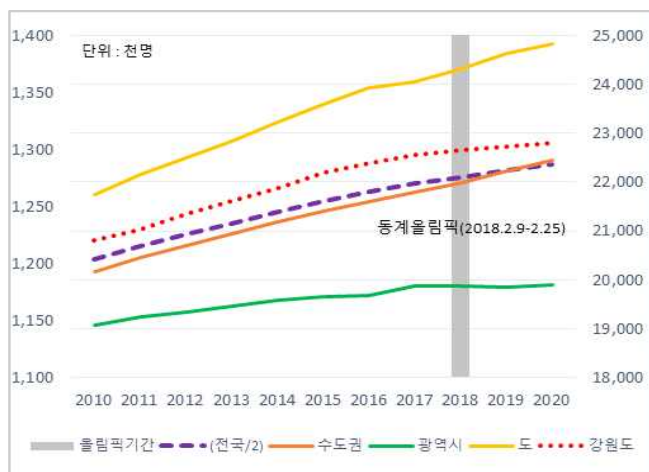
2010년~2020(1/2)년까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 지역은 2010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도 지역은 15세 이상 인구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권역으로, 2020년(-0.6% 감소)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가장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증감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전국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경찰조사 경제활동인구(2010~2019년)

라. 15세 이상 인구

2010년~2020(1/2)년까지 15세 이상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 지역은 2010년부터 인구 증가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나는 권역으로, 2017년 이전에는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가 거의 수평선으로 15세 인구증감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도 지역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권역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다소 유사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세가 전국보다 둔화하고 있다.



<그림 3-8> 경찰조사 15세 이상 인구(2010~2019년)

2. 지역별고용조사

기초자치단체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나타나는 고용지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지표 변화가 유사한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현황과 두 조사의 격차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473만 명으로 2019년 4,452만 명보다 20만 명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 명으로 전년 2,833만 명보다 60만 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는 2,656만 명으로 2019년 2,727만 명보다 71만 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도 2019년 61.3%에서 2020년 59.4%로 -1.9%p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19년 3.7%에서 2020년 4.2%로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지역별고용조사 총괄

(단위: 천명, %, %P)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인구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비율	증감	비율	증감
2010	40,933	25,134		24,270		59.3		3.4	
2011	41,433	25,412	1.1	24,548	1.1	59.2	-0.0	3.4	-0.0
2012	41,896	25,788	1.5	24,968	1.7	59.6	0.3	3.2	-0.2
2013	42,321	26,336	2.1	25,560	2.4	60.4	0.8	2.9	-0.2
2014	42,813	27,063	2.8	26,116	2.2	61.0	0.6	3.5	0.6
2015	43,257	27,281	0.8	26,336	0.8	60.9	-0.1	3.5	-0.0
2016	43,620	27,532	0.9	26,535	0.8	60.9	-0.0	3.5	0.1
2017	43,943	27,916	1.4	26,885	1.3	61.2	0.3	3.7	0.2
2018	44,192	28,046	0.5	26,979	0.3	61.0	-0.1	3.8	0.1
2019	44,522	28,328	1.0	27,274	1.1	61.3	0.2	3.7	-0.1
2020(1/2)	44,725	27,734	-2.1	26,562	-2.6	59.4	-1.9	4.2	0.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한편 강원도의 지역별고용조사 고용지표도 경제활동인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강원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으로 2019년 130만 명보다 3천 명 증가한 것에 반하여, 경제활동인구는 83만 4천 명으로 2019년 86만 2천 명보다 2만 8천 명(-3.3%)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는 80만 1천 명으로 2019년 83만 6천 명보다 3만 5천명(-4.2%) 규모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률도 2019년 64.1%에서 2020년 61.3%로 -2.8%p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19년 3.1%에서 2020년 3.9%로 0.9%p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별고용조사) 강원도 지역별고용조사 총괄

(단위: 천명, %, %P)

구 분	15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인구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비율	증감	비율	증감
2010	1,223	728		711		58.1		2.4	
2011	1,231	704	-3.3	689	-3.0	56.0	-2.1	2.1	-0.3
2012	1,245	722	2.6	704	2.2	56.6	0.6	2.5	0.4
2013	1,255	742	2.8	727	3.2	57.9	1.3	2.1	-0.4
2014	1,267	772	3.9	750	3.2	59.2	1.3	2.8	0.7
2015	1,281	782	1.3	760	1.3	59.4	0.2	2.7	-0.0
2016	1,288	787	0.7	770	1.3	58.9	-0.4	2.8	0.1
2017	1,295	834	5.9	812	5.5	62.7	3.8	2.6	-0.3
2018	1,300	834	0.1	812	-0.0	62.4	-0.3	2.7	0.1
2019	1,303	862	3.4	836	3.0	64.1	1.7	3.1	0.4
2020(1/2)	1,306	834	-3.3	801	-4.2	61.3	-2.8	3.9	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고용지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동하는데,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2,799만 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2,773만 명으로 조사 간 차이는 26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2,680만 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2,656만 명으로 조사 간 차이는 24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59.9%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59.4%로 조사 간 차이는 0.5%p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표가 지역별고용조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전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비교

(단위: 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경활조사	지고조사	비중	경활조사	지고조사	비중	경활조사	지고조사	차이
2010	24,956	25,134	99.3	24,033	24,270	99.0	58.9	59.3	-0.4
2011	25,389	25,412	99.9	24,527	24,548	99.9	59.3	59.2	0.1
2012	25,781	25,788	100.0	24,955	24,968	99.9	59.6	59.6	0.0
2013	26,108	26,336	99.1	25,299	25,560	99.0	59.8	60.4	-0.6
2014	26,836	27,063	99.2	25,897	26,116	99.2	60.5	61.0	-0.5
2015	27,153	27,281	99.5	26,178	26,336	99.4	60.5	60.9	-0.4
2016	27,418	27,532	99.6	26,409	26,535	99.5	60.6	60.9	-0.3
2017	27,748	27,916	99.4	26,725	26,885	99.4	60.8	61.2	-0.4
2018	27,895	28,046	99.5	26,822	26,979	99.4	60.7	61.0	-0.3
2019	28,186	28,328	99.5	27,123	27,274	99.4	60.9	61.3	-0.4
2020(1/2)	27,993	27,734	100.9	26,799	26,562	100.9	59.9	59.4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강원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고용지표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동하는데,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82만 5천 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83만 4천 명으로 조사 간 차이는 9천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78만 9천 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80만 1천 명으로 조사 간 차이는 1만 2천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60.4%이고 지역별고용조사는 61.3%로 조사 간 차이는 0.9%p로 지역별고용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표보다 지역별고용조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강원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비교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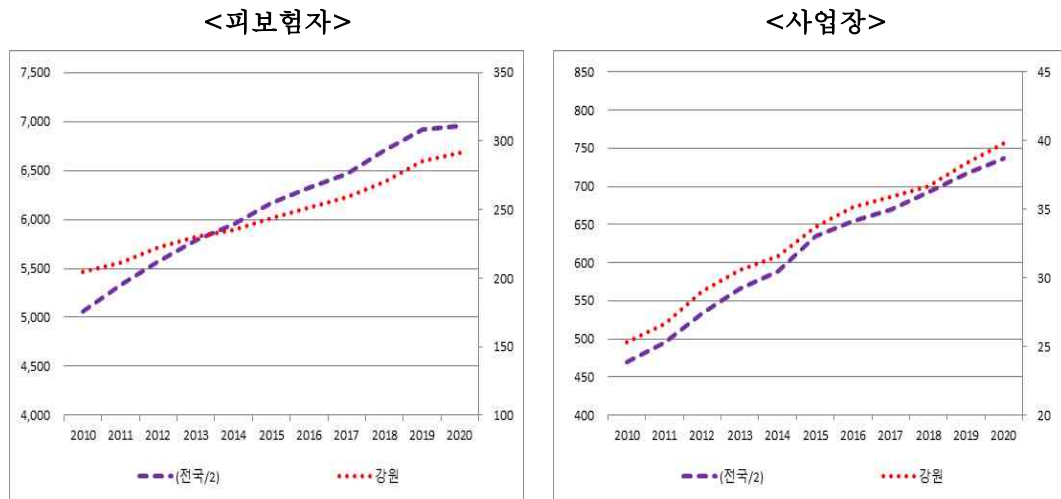
구 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경찰조사	지고조사	비중	경찰조사	지고조사	비중	경찰조사	지고조사	차이
2010	701	728	96.3	683	711	96.1	56.0	58.1	-2.1
2011	707	704	100.4	692	689	100.3	56.2	56.0	0.2
2012	725	722	100.4	707	704	100.4	56.9	56.6	0.3
2013	723	742	97.3	706	727	97.1	56.3	57.9	-1.6
2014	743	772	96.3	721	750	96.1	56.9	59.2	-2.3
2015	765	782	97.9	741	760	97.5	57.9	59.4	-1.5
2016	771	787	97.9	749	770	97.3	58.2	58.9	-0.7
2017	811	834	97.3	790	812	97.2	61.0	62.7	-1.7
2018	812	834	97.4	789	812	97.1	60.7	62.4	-1.7
2019	841	862	97.6	811	836	97.1	62.3	64.1	-1.8
2020(1/2)	825	834	99.0	789	801	98.5	60.4	61.3	-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제3절 분석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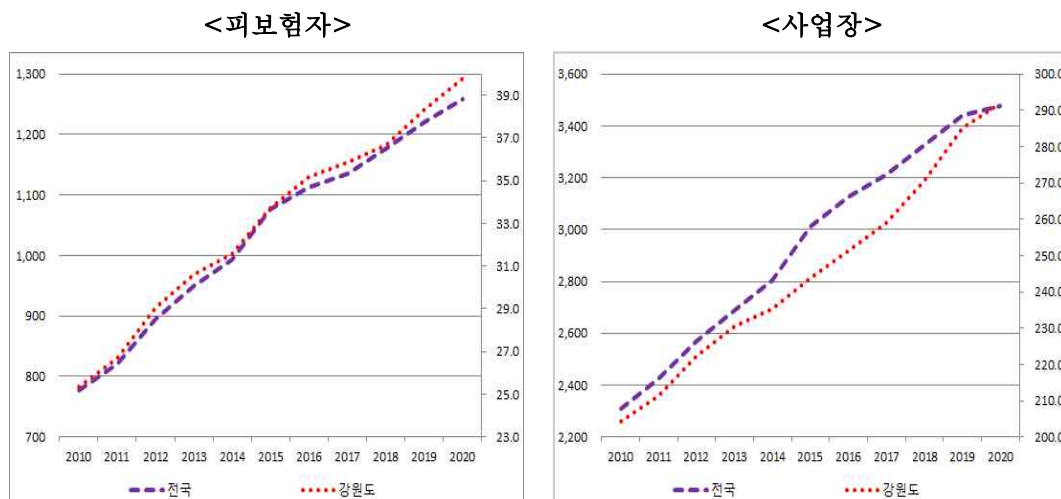
1. 방향설정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전국 기울기와 강원도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피보험자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피보험자 증가가 전국의 증가보다 작게 증가하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피보험자 증가가 비슷하게 증가하거나 다소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사업장 증가가 전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사업장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가입자가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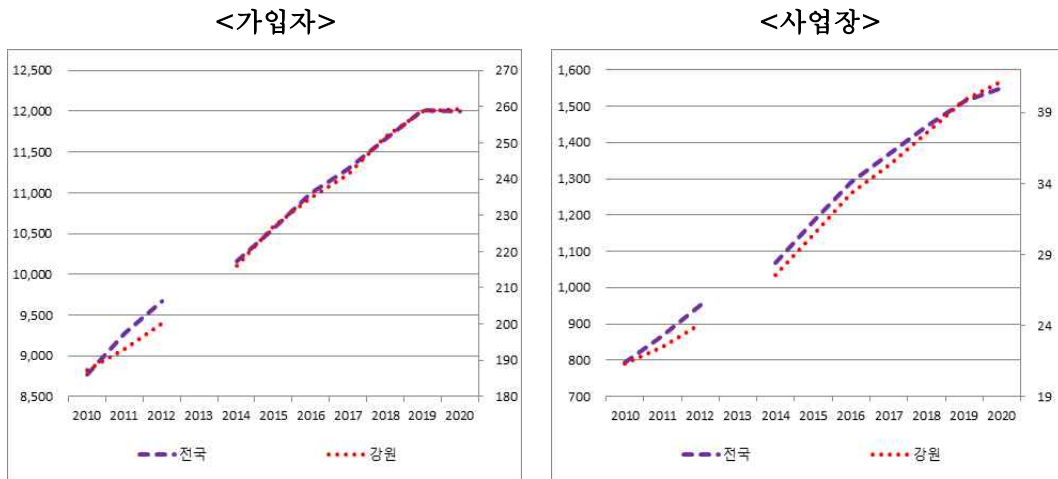
<그림 3-9> (고용보험) 권역별 피보험자 및 사업장 변화

한국고용정보원의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그래프에서 2018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피보험자 증가가 전국의 증가와 거의 일치하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피보험자 증가가 전국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의 그래프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의 사업장 증가가 전국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사업장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가입자가 미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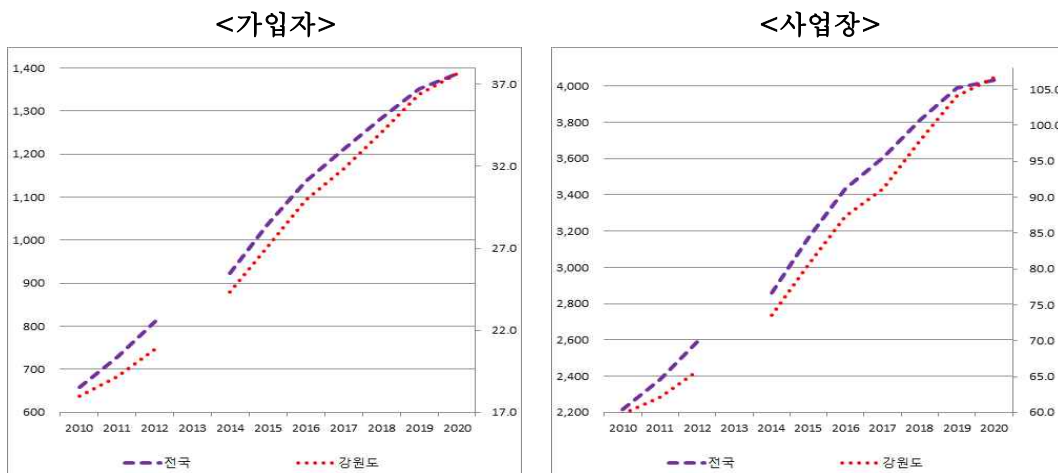
<그림 3-10> (고용보험) 10인 미만 피보험자 및 사업장 변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입자자 그래프에서 2014년 이전에는 강원도 증가가 전국의 증가보다 완만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가 거의 일치하였고, 사업장의 그래프는 2017년 이전에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가 비슷했는데, 2018년 이후에 강원도 증가가 약간 높게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이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3-11>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 변화

국민연금 10인 미만 사업장과 가입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입자 측면에서 2018년 이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가 거의 비슷한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 증가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 측면에서 2017년 이전에는 강원도와 전국의 증가가 거의 비슷한데,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3-12> (국민연금) 10인 미만 가입자 및 사업장 변화

앞의 행정자료 분석에서는, 위의 그래프에서 국민연금은 고용보험보다 변화는 작게 나타나지만, 일자리정책 진행 기간에 전국의 증가율에 비하여 증가 폭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고용보험의 변화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강원도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자료 분석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고용지표와 강원도의 고용지표에 큰 차이가 없어서 강원도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하기로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별 근로자 수 변화에 의한 고용효과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사업장별 근로자 수 분석’ 방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자료를 구축하는데, 사업장별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사업장별 더미변수’를 부여하고, 기초자료로는 행정자료(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용효과 분석 품질은 떨어지지만,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2. 이중차분법 정의

가. 이중차분법 의의

어떠한 정책에 혜택을 받은 집단(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받지 못한 집단(대조집단, Comparison Group)을 비교하여 정책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론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추정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은 보통 정책 시행 전후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데 쓰인다(World Bank, 2010). 이러한 이중차분법은 처치집단과 동질적인 대조집단을 설정하여 전후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이 제거되어 인과효과 추정값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교하는 것보다 수혜자(처치집단)와 비수혜자(대조집단)로 나누어서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순수한 정책 수혜의 영향만을 볼 수 있다.

이중차분법 추정량은 기본적으로 처치집단의 정책 시행 이후와 이전 간의 결과변수 값의 차분에서 대조집단의 정책 시행 이후와 이전 간의 결과변수 값의 차분을 빼는 것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1 - Y^0 = (D + \gamma + \eta^1) - (\gamma + \eta^0) = D + (\eta^1 - \eta^0) \quad (\text{차분1})$$

$$Y^1 - Y^0 = (\lambda + \theta^1) - (\lambda + \theta^0) = (\theta^1 - \theta^0) \quad (\text{차분2})$$

$$(\text{차분1}) - (\text{차분2}) = D + (\eta^1 - \eta^0) - (\theta^1 - \theta^0) \quad (\text{이중차분법 추정량})$$

위의 식에서 Y 는 결과변수, D 는 정책의 효과, γ 는 처치집단의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요인, η 는 처치집단의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 λ 는 대조집단의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요인, θ 는 대조집단의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1과 0은 각각 정책 시행 이후와 이전을 나타내는 첨자이다.

위의 식에서 정책 시행 이후의 결과 값은 정책의 효과,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처치집단의 특성(γ),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하는 처치집단의 특성(η)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차분법 설계하에서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요인은 제거가 된다. 반면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은 이 설계하에서 제거가 되지 않지만, 만약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이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의한 요인도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이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중차분법 추정기법으로 정책의 인과 효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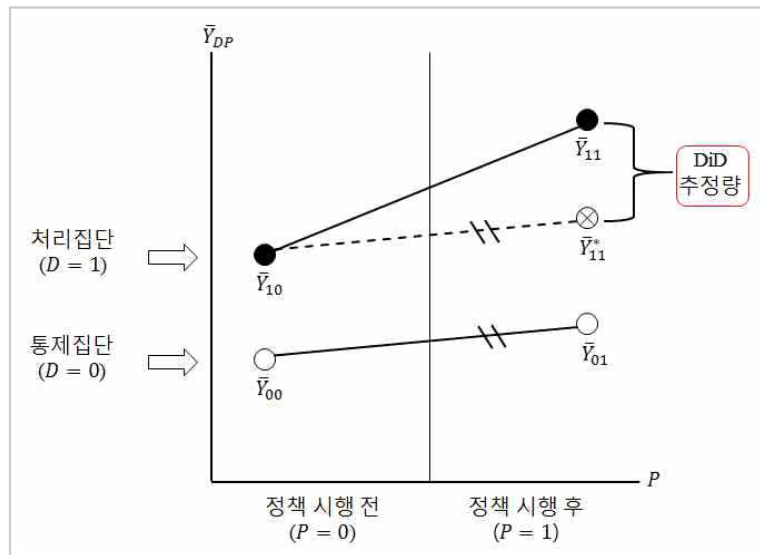
이중차분법 추정량을 통해 정책의 효과(D)만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DID 추정량의 식별조건인 ‘평행추세(parallel trend)’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 항등식이 ‘평행추세(parallel trend)’ 가정¹⁰⁾이다.

$$(\eta^1 - \eta^0) - (\theta^1 - \theta^0) = 0 \quad (\text{평행추세 가정})$$

$$(\eta^1 - \eta^0) = (\theta^1 - \theta^0)$$

아래의 그림으로 위 항등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알 수 있다. <그림 3-13>에서,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처치집단의 실제 결과변수 값은 $\overline{Y_{11}}$ 가 아닌 $\overline{Y^*_{11}}$ 로 나타났을 것이다. 대조집단을 보면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정책 시행 이후에 결과변수 값이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위 항등식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처치집단에서 관측된 결과변수 값의 상승 정도가 대조집단에서 관측된 상승분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0) 만약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정책 혜택 집단과 정책 비혜택 집단의 결과변수의 값이 정책 시행 전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그림 3-13> 이중차분법 추정량

3. 정책효과 선행연구

성재민 외 2인(2017)의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증대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두루누리 지원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증대 효과 추정은, 두루누리 제도의 시행 이전 시점 2011년 12월을 통제시점으로 정하고, 처치시점은 사업 시행 이후의 5가지(① 2012년 12월에 월급여 125만 원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② 2013년 12월에 월급여 13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③ 2014년 12월에 월급여 135만 원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④ 2015년 12월에 월급여 14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⑤ 2016년 12월에 월급여 14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로 구분하였고, 처치집단은 위의 급여 상한액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1~9인 사업장이고, 통제집단은 급여 상한액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10~19인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는 연도별 해당 사업장의 지원대상 급여 수준의 가입자 수를 사용하였으며, 정책 시행(확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D)을 실증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2011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자 수가 누적되어 2016년에는 5년 전인 2011년에 비해 두루누리로 인해 24.4%의 가입자가 증

가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효과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도입 시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지속해서 확대 시행된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시 고용보험 가입효과)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시범사업(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시)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과 ② 본 사업(2012년 7월 이후)에 대한 정책효과를 추정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추정은 제도 도입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본 사업 실시 이전인 2012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월별·지역(시·군·구)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하고, 처리집단은 두루누리 시범사업 실시지역이고, 통제집단은 시범사업 선정 시 후보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가입자 수를 집계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월급여 125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업 추정은 제도도입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1년(12개월) 동안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지역(시·도)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하고, 처리집단은 국민연금 가입효과 분석과 유사하게,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사업장이고, 통제집단은 10~19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17개 광역시·도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하며, 시범사업 효과분석과 마찬가지로,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월급여 125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함께 집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최근 3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효과)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부터 3년(36개월) 동안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지역(시·도)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하고, 처리집단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사업장이고, 통제집단은 10~19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17개 광역시·도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하였는데, 2015년 1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상향 조정된 월급여 140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변화 대상이 된 월급여 135~140만 원 수준의 가입자도 함께 집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두루누리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동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시범지역이 후보지역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두루누리 본 사업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동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도 수준에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인 미만 규모 집단에서 10~19인 규

모 집단보다 제도 시행 이후에 약 6.1%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실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 수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대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 효과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상당히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구분에서 신규 가입자를 더 유인하는 데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김준(2016)의 연구는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시스템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두루누리 제도의 시행 이전(처치 전) 시점 2011년 8월을 통제시점으로 정하고, 시행 이후(처치 후)의 1차 시점 2013년 8월을 1차 처치시점으로, 2차 시점 2015년 8월을 2차 처치시점으로 설정하고, 처치집단은 고용보험 법적 적용자, 9인 이하 사업장, 두루누리 사업 적용 기준 임금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근로자이고, 통제집단은 고용보험 법적 적용자, 9인 이하 사업장, 두루누리 사업 적용 기준 임금보다 1~10만 원 높은 임금(성향점수 평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근로자로 선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2011년 8월과 2013년 8월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효과는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오히려 -0.1%p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1년 8월과 2015년 8월을 비교분석을 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효과는 5.0%p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규모(1~4인, 5~9인), 임금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의 가입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약 1년간)에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제도 시행 2~3년 차에는 다소의 가입률 증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도형(2016)의 연구는 두루누리 사업의 시범지역과 시범지역 예비후보지였으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변동을 이용하여 사회보험(국민연금) 가입 증가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자료를 사용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log(1+Y)$)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는데, 각 사업장에서 월급여 125만 원 미만의 가입자 수를 의미하며, 10인 미만 사업장 중 분석 기간에 새로 생기거나 사라진 사업장의 가입자 수 0으로 간주하여 균형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처치집단은 시범사업 실

시지역에 존재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이고, 통제집단은 시범사업 미시행 예비후보지역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선정하였고, 처치 전의 시범지역(2011년 6월과 2012년 1월 비교)과 후보지역(2011년 6월과 2012년 6월 비교)의 통제시점을 정하고, 처치 후의 시범지역(2012년 2월과 2013년 6월 비교)과 후보지역(2012년 7월과 2013년 6월 비교)의 처치시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2013년 6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업 때문에 사회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예산 대부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게 대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경준 외 2인(2016)의 연구는 두루누리 사업의 시범지역과 시범지역 선정 후보지역이었으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변동을 이용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증가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처치 전(통제시점)의 분석대상 시기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8개월간의 자료(32개 지역, 총 576개 월별 관측치)이고, 처치 후(처치시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고, 처치집단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통제집단은 10~29인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종속변수는 가입자 수 변동분이고, 관측치는 사업체 단위이다. 분석 결과에서 두루누리 시범사업(2012년 2월~6월)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키고, 두루누리 본 사업(2012년 7월~2013년 6월)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7%,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외 5인(2014)의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두루누리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두루누리 제도의 시행 이전(처치 전) 시기를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행 이후(처치 후) 시기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또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로 설정하고, 처치집단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면서 임금 수준이 각 연도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로, 통제집단은 10~29인 사업장 근로자로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면서 임금 수준이 각 연도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로 선정하고,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 추가로 통제한 후 선형 확률 모델을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단순 차분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률 증대효과는 1.5%p로 분석되었으며, 선형확률 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2013년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1.0%p 높이고, 2014년 기준으로는 0.2%p 높인 것으로 보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나서 이병희 외 5인(2014)은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두루누리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경준 외 3인(2013)의 연구는 분석대상 시기를 처치 전(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처치 후(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9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처치집단)와 10~29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통제집단)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수를 약 1.6%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를 약 2.7%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고용정책 효과분석

제1절 자료구축 및 모형설정

1. 패널자료 구축

강원도 일자리정책 고용효과 분석에는 사업장별 근로자(피보험자) 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조사대상 사업장이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사업장별 근로자 수(피보험자)는 고용 관련 자료이기에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자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자료로 선택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기초자료는 ‘통계청 행정자료포털시스템’의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장별 근로자 수 자료(2010년~2020년, 매년 12월, 2020년은 6월)를 입수한 후 로그(Log+1)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정책더미 변수는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대상(처치군과 대조군을 구분)을 판단하는 더미변수인데, ① 강원도 지역에 사업장이 존재하고, ② 2018년~2020년에 존속하는 사업장이고, ③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더미변수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2010년~2020년)를 사용하였는데,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탑승객 관련 통제변수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전체 열차 탑승객을 나타내는 변수(통제변수 1)이고 나머지 한 개는 KTX 탑승객을 나타내는 변수(통제변수 2)로 지역별, 연도별로 입수한 자료를 로그(Log+1)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시간더미 변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개의 연도별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자리정책 대상사업장과 특성이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균형패널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측치가 없는 code (사업장)는 관측사업장으로 대체하고, 종사자도 0명으로 대체하였다.

산업분류는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자료의 업종코드 자료(TOB_CD, TOB_CD_NM)를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작성하였는데, 1차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등록번호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연계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명 등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연계하였다.

2. 모형설정

강원도 고용정책 효과분석은 ① 강원 vs 대조군(X), ② 고용정책 수행 vs 미수행(Y), ③ 10인 미만 vs 10인 이상(30인 미만)(Z) 3가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DDD(삼중차분법, differences-in-differences-in-differences) 분석이다. 그러나 DDD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사용(X, Y, Z, XY, YZ, ZX, $\beta \cdot XYX$)하는데 변수선택, 기초자료 및 자료처리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한계점 때문에 X, Y, Z 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종사자 10인 미만, less10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DDD 분석의 변형된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다.

강원도 정책효과 분석은 일자리정책의 시행(2018년) 전후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text{기본모형 : } y_{imt} = \alpha + \delta D_{imt} + \beta \text{less10}_{imt} + C_i + \lambda_t + \epsilon_{it}$$

여기에서, i = 사업장
 m = 시도
 t = 연도(12월 기준, 2020년은 6월 기준)

기본모형에서 종속변수(y_{imt})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수이고 로그($0 = y+1$) 변환을 취한다. 정책더미(D_{imt})는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대상(처치군과 대조군을 구분)인가를 판단하는 더미변수인데, 정책효과 대상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10인 미만 사업장 더미(less10_{imt})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사업장효과 변수(C_i)의 특성은 FE(Fixed Effect) 패널 분석 방법에서는 모형에 표시하지만, 사업장변수(ID) 항목을 변수선언에서 사용하여 저절로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시간더미(λ_t)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개의 연도별 더미변수를 나타내고, ϵ_{it} 는 오차항이다.

$$\text{통제모형 1 : } y_{imt} = \alpha + \delta D_{imt} + \beta \text{less10}_{imt} + C_i + \lambda_t + KTX_{mt} + \epsilon_{it}$$

$$\text{통제모형 2 : } y_{imt} = \alpha + \delta D_{imt} + \beta \text{less10}_{imt} + C_i + \lambda_t + TRAIN_{mt} + \epsilon_{it}$$

여기에서, i = 사업장
 m = 시도
 t = 연도(12월 기준, 2020년은 6월 기준)

통제모형은 기본모형에 지역별로 특수한 수요충격(기차에 의한 소비증가 및 고용 증가 등과 같이 열차 탑승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혼동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① 연도별, 지역별 KTX 탑승자 수, ② 연도별, 지역별 열차(KTX+새마을+무궁화) 탑승자 수를 포함한 모형1과 모형2를 설정하였고, 이 통제변수(KTX, TRAIN 탑승자)는 로그(탑승자+1)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대조군 선정

이중차분법(DID) 또는 삼중차분법(DDD) 분석의 핵심적인 가정은 처치군 사업장이 일자리정책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평균적으로 대조군의 성과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대조군은 일자리정책 수혜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처치군과 평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사업장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자리정책 이후에 나타나는 처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가 일자리정책으로부터 유발된 차이인지, 아니면 정책 이외에 다른 차이가 단지 일자리정책 이후로 연장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군이 강원도라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고용 효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강원도 일자리정책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군의 범위를 변경(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하여 강원도 인접의 시·군(경기도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및 권역(경기도 권역, 충청북도 권역, 경상북도 권역)별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총괄 효과분석

강원도 일자리정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효과분석을 추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FE(Fixed Effect) panel estimation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조군은 전국을 비롯하여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총괄에서는 다양한 계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주요항목만 설명하도록 한다.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효과분석 결과는 모형의 종류와 대조군에 따라서 정책효과가 다소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0.2%~1.1%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대조군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기본모형에서 1.1%, 통제모형 1(KTX 탑승자)에서 1.0%, 통제모형 2(열차 탑승자)에서 0.5%의 효과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 지역 대조군은 고용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모형 1(KTX)도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0.2%~1.2% 정도의 효과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정책효과 총괄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23* (0.001)	0.0015 (0.001)	0.0022* (0.001)	0.0027** (0.001)	-0.0008 (0.001)	0.0026** (0.001)
log(탑승자)		0.0001 (0.000)	0.0003 (0.000)		0.0002*** (0.000)	0.0001 (0.000)
10인 미만 더미	-1.858*** (0.001)	-1.858*** (0.001)	-1.858*** (0.001)	-1.840*** (0.001)	-1.840*** (0.001)	-1.840*** (0.001)
상수항	2.270*** (0.147)	2.270*** (0.147)	2.265*** (0.147)	1.989*** (0.148)	1.984*** (0.148)	1.986*** (0.148)
결정계수	0.67			0.66		
관측치 수 (천개)	32,158			18,792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09*** (0.001)	0.0050*** (0.001)	0.0104*** (0.001)	-0.0060*** (0.001)	0.0119*** (0.002)	-0.0119*** (0.001)
log(탑승자)		0.0004*** (0.000)	0.0011*** (0.000)		-0.0013*** (0.000)	0.0141*** (0.001)
10인 미만 더미	-1.847*** (0.001)	-1.847*** (0.001)	-1.847*** (0.001)	-1.867*** (0.001)	-1.868*** (0.001)	-1.867*** (0.001)
상수항	1.988*** (0.146)	1.980*** (0.146)	1.968*** (0.147)	2.289*** (0.147)	2.309*** (0.147)	2.062*** (0.147)
결정계수	0.67			0.68		
관측치 수 (천개)	16,369			16,686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분석 결과는 지역별 상황 및 권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서 대조군에 따라 다소 다른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명확한 정책효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

래에 산업별 분석, 강원도 인접 지역(시·군)별 분석, 지속 및 신규사업장 분석, 근로자 규모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산업 그룹별 효과분석

총괄 분석에서 살펴본 강원도 일자리정책 고용효과 결과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산업별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브그룹(sub-group)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산업대분류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3개 그룹으로 선정하였는데, 각 그룹은 제조업·건설업 그룹, 서비스업 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서비스업 그룹, 그리고 이외의 기타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표 4-2> 산업대분류별 그룹

그 룹 (‘19년 지원횟수)	산업 설명(산업대분류)
제조·건설업 (21,171회)	제조업(C), 건설업(F)
서비스업 (65,651회)	도매 및 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기타 산업 (17,633회)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관광산업	핵심 관광산업 (부록 참조)

자료 : 강원도청

<표 4-3>(사회보험료 지원 횟수 및 근로자)에서, 2019년 강원도 일자리정책 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는 104,455회로 산업대분류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0,415회로 가장 많은 횟수이고, 그 다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9,294회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제조업·건설업이 21,171회이고, 서비스업이 65,651회이며, 기타 산업이 17,633회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국사업체조사 10인 미만 종사자 수 비중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횟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 수의 29.1%로 가장 큰 비중(도매 및 소매업은 22.2%)을 차지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 횟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이 19.1%로 숙박 및 음식점업 15.7%보다 13.4%p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비중은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료 지원 횟수 비중은 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 횟수 비중이 15.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산업대분류별 사회보험료 지원 횟수 및 근로자

구 분	2019년		2018년		근로자(2018년)		차이(%P) (A-B)
	지원횟수(회)	비중(%)	지원횟수(회)	비중(%)_A	근로자(명)	비중(%)_B	
TOT	104,455	100.0	92,282	100.0	299,664	100.0	0.0
A	1,250	1.2	906	1.0	986	0.3	0.7
B	14	0.0	40	0.0	470	0.2	-0.1
C	8,925	8.5	7,977	8.6	21,788	7.3	1.4
D	48	0.0	41	0.0	265	0.1	0.0
E	527	0.5	443	0.5	1,096	0.4	0.1
F	12,246	11.7	11,404	12.4	20,647	6.9	5.5
G	20,415	19.5	17,601	19.1	66,526	22.2	-3.1
H	1,976	1.9	1,468	1.6	12,600	4.2	-2.6
I	17,671	16.9	14,525	15.7	87,175	29.1	-13.4
J	1,031	1.0	737	0.8	2,146	0.7	0.1
K	186	0.2	196	0.2	4,453	1.5	-1.3
L	4,969	4.8	4,495	4.9	7,942	2.7	2.2
M	9,596	9.2	8,129	8.8	7,317	2.4	6.4
N	12	0.0			5,412	1.8	-1.8
O					1,188	0.4	-0.4
P	5	0.0			11,372	3.8	-3.8
Q	19,294	18.5	19,023	20.6	14,943	5.0	15.6
R	1,394	1.3	1,058	1.1	9,199	3.1	-1.9
S	4,896	4.7	4,239	4.6	24,139	8.1	-3.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강원도청

<표 4-4> 그룹별(제조업·건설업)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490*** (0.001)	0.0780*** (0.004)	0.0514*** (0.003)	0.0694*** (0.003)	0.0816*** (0.004)	0.0712*** (0.003)
log(탑승자)		-0.0023*** (0.000)	-0.0055*** (0.005)		-0.0010*** (0.000)	-0.0041*** (0.001)
관측치 수 (천개)	6,409			3,549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716*** (0.003)	0.0930*** (0.004)	0.0738*** (0.003)	0.0349*** (0.003)	0.0580*** (0.006)	0.0268*** (0.004)
log(탑승자)		-0.0017*** (0.000)	-0.0046*** (0.001)		-0.0018*** (0.004)	0.0194*** (0.004)
관측치 수 (천개)	2,569			3,980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강원도 정책효과 세부검토 및 이질성 분석을 위한 서브그룹(sub-group)을 제조업·건설업 그룹으로 선정한 효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전국 대조군의 경우에 고용효과는 4.9%(수도권 대조군은 6.9%, 광역시 대조군은 7.2%, 도 지역 대조군은 3.5%) 정도의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모형 1(KTX)의 경우에도 모든 대조군(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의 고용효과가 5.8%~9.8% 정도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그룹별(서비스업)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18*** (0.002)	0.0026 (0.002)	0.0115*** (0.002)	0.0157*** (0.002)	0.0022 (0.002)	0.0151*** (0.002)
log(탑승자)		0.0070*** (0.000)	0.0007** (0.000)		0.0010*** (0.000)	0.0015*** (0.000)
관측치 수 (천개)	16,190			9,621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240*** (0.002)	0.0076*** (0.002)	0.0230*** (0.002)	-0.0013*** (0.002)	0.0196*** (0.003)	0.00002 (0.002)
log(탑승자)		0.0013*** (0.000)	0.0022*** (0.000)		-0.0016*** (0.000)	-0.0032 (0.002)
관측치 수 (천개)	8,595			8,055		

주 :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서브그룹(sub-group)을 서비스업 그룹으로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전국 대조군의 경우에 고용효과는 1.2%이고, 수도권은 1.6%, 광역시는 2.4% 정책효과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 지역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모형 2(열차) 경우에, 전국, 수도권, 광역시 대조군은 고용효과가 1.2%~2.3% 정도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 지역은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 세부검토 및 이질성 분석을 위한 서브그룹(sub-group)을 제조업·건설업인 경우와 서비스업인 경우에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조업·건설업의 고용정책 효과가 서비스업의 고용정책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고용보험의 산업 그룹별로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수의 비중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제조업·건설업의 근로자 3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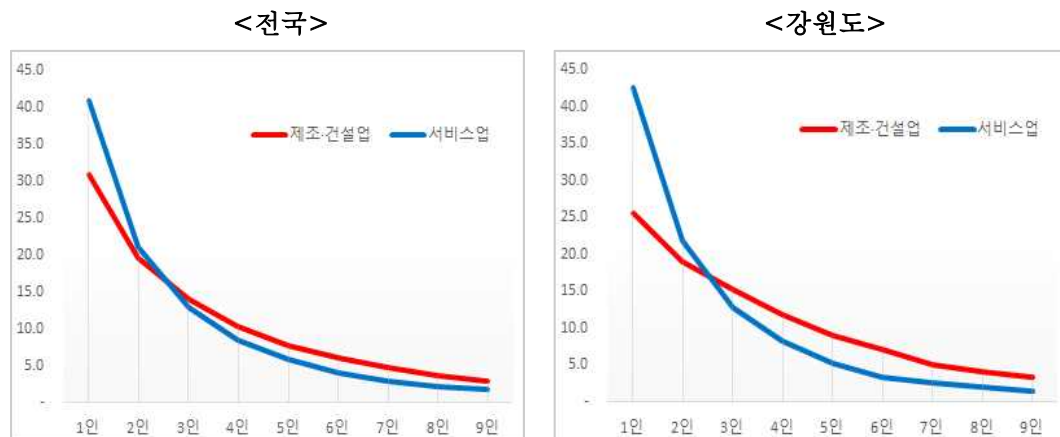
하 비중은 64.5%인데 서비스업은 74.8%로 서비스업이 10.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의 근로자 규모가 제조업·건설업의 근로자 규모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사업장은 작은 비용의 지출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표 4-6> (고용보험) 2018년 그룹별 지역별 사업장 비중

(단위: %)

지역	그룹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전국	제조·건설	30.8	19.6	14.1	10.4	7.7	6.0	4.8	3.7	2.9
	서비스업	40.9	21.0	12.9	8.35	5.8	4.0	2.9	2.2	1.8
강원	제조·건설	25.6	18.9	15.2	11.8	9.0	7.0	5.1	4.1	3.3
	서비스업	42.5	21.8	12.9	8.2	5.1	3.4	2.5	2.0	1.5

참고 : 도표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그림 4-1> 산업 그룹별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비중(%)

정책효과 세부검토 분석을 위한 서브그룹(sub-group)을 제조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산업 그룹으로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과 통제모형 1(열차)에서 모든 대조군(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에 대하여 고용효과가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별 분석에서 제조업·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고용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산업은 고용효과와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표 4-7> 그룹별(나머지 기타 산업)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668*** (0.003)	-0.0688*** (0.004)	-0.0674*** (0.003)	-0.0800*** (0.003)	-0.0877*** (0.004)	-0.0080*** (0.003)
log(탑승자)		0.0002 (0.000)	0.0015** (0.001)		0.0006*** (0.000)	0.0022** (0.001)
관측치 수 (천개)	5,391			3,426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703*** (0.003)	-0.0782*** (0.004)	-0.0715*** (0.003)	-0.0619*** (0.003)	-0.0298*** (0.005)	-0.0615*** (0.003)
log(탑승자)		0.0010*** (0.000)	0.0028*** (0.002)		-0.0024*** (0.002)	-0.0010 (0.003)
관측치 수 (천개)	3,134			2,415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표 4-8> 그룹별(관광 핵심산업) 정책효과 분석 결과(참고사항)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42 (0.003)	0.0028 (0.003)	0.0048* (0.003)	0.0122*** (0.003)	0.0023 (0.003)	0.0122*** (0.003)
log(탑승자)		0.0001 (0.000)	-0.0015** (0.001)		0.0008*** (0.000)	5.5690 (0.001)
관측치 수 (천개)	3,817			2,275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52*** (0.003)	0.0079** (0.004)	0.0153*** (0.003)	-0.0076** (0.003)	0.0078 (0.005)	-0.0055* (0.003)
log(탑승자)		0.0006*** (0.000)	-0.0003 (0.001)		-0.001*** (0.000)	-0.0050 (0.004)
관측치 수 (천개)	2,044			1,915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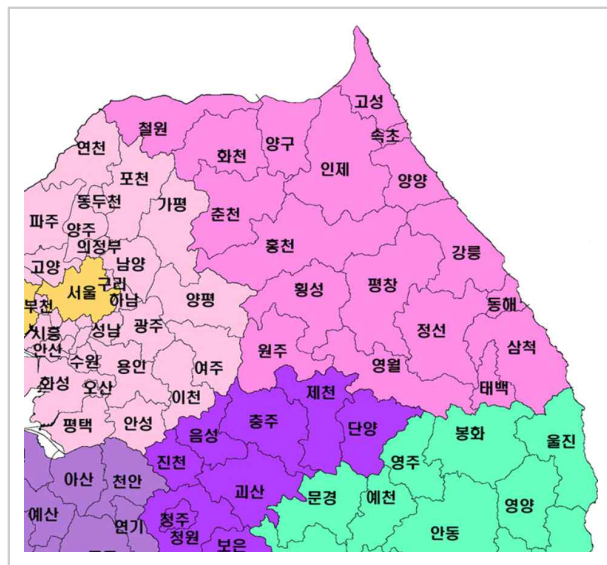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효과 이질성 분석을 위한 서브그룹(sub-group)을 관광핵심 산업으로 선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전국의 대조군은 0.4% 고용효과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광역시 대조군은 각각 1.2%, 1.5% 고용효과가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 지역은 고용효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모형 1(열차)도 기본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대분류별 고용정책 효과분석에서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의 고용효과는 대체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타 산업이 고용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산업분류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분류는 국민연금 사업장의 산업분류를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3. 강원도 인접지역(시·군) 효과분석

강원도 일자리정책에 의한 고용효과의 인과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계별로 강원도와 인접한 시·군을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는 강원도와 인접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경계한 시·군을 선정하여 처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분석하는데, 철도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고용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철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¹¹⁾을 대상으로 처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기본모



<그림 4-2> 강원도 인접지역 지도

형으로 분석하였고, 2단계는 강원도와 인접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경계한 시·군 권역을 3곳으로 분리하여 선정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철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11) 열차 및 KTX 탑승객은 자료구축 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분석단계에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의미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강원도 인접한 20개 모든 시·군을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4-9> 강원도 인접지역 분석단계 선정

구분	강원도(처치군) vs 타지역(대조군)
1단계	(강원도 vs 경기도) - 철원군·연천군, 철원군·포천시, 화천군·가평군, 춘천시·가평군 (강원도 vs 충청북도) - 영월군·제천시, 영월군·단양군 (강원도 vs 경상북도) - 삼척시·울진군, 태백시·봉화군
2단계	(강원도 vs 경기도) -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vs 충청북도) - (영월군 원주시) ·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강원도 vs 경상북도) - (삼척시 태백시) · (울진군 봉화군)
3단계	(강원도) - 9개 시·군 -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11개 시·군 -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지역별 처치군과 대조군은 위의 그림과 표와 같이, 강원·경기 지역, 강원·충북 지역, 강원·경북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접 시·군별 비교, 권역별 비교, 전체 지역별 비교를 하였다.

1단계 분석단계는 지리적 입지 조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통 및 도로에 의한 이동성과 접근성이 쉬운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경기도 인접 시·군지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철원군(강원도) 지역의 대조군을 연천군(경기도)으로 분석한 결과는 7.4% 정도의 고용효과가 나타났고, 대조군을 포천시(경기도)로 분석한 결과 3.3%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춘천시(강원도)의 대조군을 가평군으로 분석한 결과는 3.8%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세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천군(강원도) 지역의 대조군을 가평군(경기도)으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충청북도 인접 시·군지역의 분석 결과에서, 영월군(강원도) 지역의 대조군을 단양군(충청북도)으로 분석한 결과와 제천시(충청북도)로 분석한 결과는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강원도 vs 경기도 인접 시·군별 분석 결과

처치군·대조군	철원군·연천군			철원군·포천시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741*** (0.010)	0.0638*** (0.019)	0.0821*** (0.016)	0.0332*** (0.009)	0.0260 (0.002)	0.0240*** (0.001)
관측치 수 (천개)	46			189		
처치군·대조군	화천군·가평군			춘천시·가평군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700*** (0.011)	-0.0725*** (0.002)	-0.0666*** (0.002)	0.0382*** (0.006)	0.0407*** (0.010)	0.0519*** (0.009)
관측치 수 (천개)	50			190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강원도·경상북도 인접 시·군지역의 분석 결과에서, 삼척시(강원도) 지역의 대조군을 울진군(경상북도)으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0.6%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백시(강원도) 지역의 대조군을 봉화군(경상북도)으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강원도 vs 충청북도) 및 (강원도 vs 경상북도) 인접 시·군별 분석 결과

처치군·대조군	영월군·제천시			영월군·단양군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668*** (0.008)	-0.0527*** (0.015)	-0.0732*** (0.008)	-0.0354*** (0.010)	-0.0471** (0.018)	-0.0356*** (0.011)
관측치 수 (천개)	94			40		
처치군·대조군	삼척시·울진군			태백시·봉화군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65 (0.009)	0.0114 (0.015)	0.0070 (0.013)	-0.0037 (0.010)	0.0529*** (0.018)	-0.0207 (0.015)
관측치 수 (천개)	62			42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위의 시·군별 처치군·대조군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각 처치군·대조군의 지역별 접근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시·군별로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이동이 쉬운 지역은 고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동이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은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을 살펴보면, 처치군으로 강원도 권역(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과 대조군으로 경기도 권역(가평군, 연천군, 포천시)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3.6% 정도 정책효과가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권역(영월군, 원주시)의 대조군으로 충청북도 권역(단양군, 충주시, 제천시)으로 분석한 결과는 고용효과는 2.1% 정도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치군으로 강원도 권역(삼척시, 태백시)과 대조군으로 경상북도 권역(울진군, 봉화군)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0.2% 정도로 다소 미미한 정책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으로 처치군으로 강원도 인접 시·군 9곳을 선정하고, 대조군으로 경기도(5곳), 충청북도(3곳), 경상북도(3곳)의 11곳을 선정(전체 시·군¹²⁾)하여 분석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었고, 통제모형 1(KTX)은 2.5%의 정책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강원도 인접 시·군 권역별 분석 결과

대조군	강원·경기(7개 시·군)			강원·충북(5개 시·군)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357*** (0.003)	0.0213*** (0.006)	0.0442*** (0.005)	0.0205*** (0.003)	0.0342*** (0.006)	0.0227*** (0.003)
log(탑승자)		0.0011*** (0.000)	-0.0213*** (0.010)		-0.0011*** (0.000)	-0.0191*** (0.005)
관측치 수 (천개)	458			428		
대조군	강원·경북(4개 시·군)			강원 권역· 기타 권역(20개 시·군)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15 (0.007)	0.0269** (0.011)	-0.0055 (0.010)	0.0200*** (0.002)	0.0249*** (0.004)	0.0207*** (0.002)
log(탑승자)		-0.0020 (0.001)	0.0153 (0.016)		-0.0004 (0.000)	-0.0021 (0.003)
관측치 수 (천개)	105			1,191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앞에서 지역별로 처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 시·군을 처치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고용효과는 대조군에 따라서 고용효과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즉 시·군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처치군과 대조군을 강원도 경계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모든 권역에서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주위의 모든 시·군(20곳)을 처치군·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기본모형과 통제모형(1)에서 2.0% 이상의 정책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4. 지속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효과분석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 결과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장 창업 시기별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브그룹(sub-group) 분석을 시행하였다.

서브그룹은 두 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2010년 이전에 창설하여 10년 이상 강원도에 존속하는 사업장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이후에 신규로 창설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대조군 사이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13> 10년 이상 존속 사업장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56*** (0.002)	0.0103*** (0.002)	0.0153*** (0.002)	0.0245*** (0.002)	0.0162*** (0.002)	0.0241*** (0.002)
log(탑승자)		0.0004*** (0.000)	0.0009*** (0.000)		0.0006*** (0.000)	0.0010*** (0.000)
관측치 수 (천개)	3,195			2,202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240*** (0.002)	0.0149*** (0.002)	0.0232*** (0.002)	0.0071*** (0.002)	0.0066** (0.003)	0.0031 (0.002)
log(탑승자)		0.0007*** (0.000)	0.0018*** (0.000)		0.0000 (0.000)	0.0100 (0.002)
관측치 수 (천개)	2,012			2,017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10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장의 분석 결과는 대조군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기본모형에서 2% 정도(전국 1.6%, 수도권 2.5%, 광역시 2.4%, 도 지역 0.7%)의 일자리정책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모형 2(열차 탑승자)는 기본모형과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났는데, 도 지역만 정책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의 신규사업장의 고용효과는 대조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본모형에서 광역시는 0.2%(통제모형 1은 0.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대조군(전국, 수도권, 도 지역)에서는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2015년 이후 신규사업장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38* (0.002)	-0.0066** (0.003)	-0.0048** (0.002)	-0.0094*** (0.002)	-0.0138*** (0.004)	-0.0106*** (0.002)
log(탑승자)		0.0002 (0.000)	0.0015 (0.000)		0.0004* (0.000)	0.0017*** (0.001)
관측치 수 (천개)	8,953			5,266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18 (0.002)	0.0044 (0.003)	0.0027 (0.002)	-0.0091*** (0.002)	-0.0040 (0.004)	-0.0516*** (0.004)
log(탑승자)		-0.0002 (0.000)	-0.0011** (0.001)		-0.0005* (0.000)	0.0801*** (0.006)
관측치 수 (천개)	4,500			4,703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결론적으로 10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장은 모든 대조군에서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의 신규사업장의 고용효과는 대조군에 따라서 다소 낮게 나타나서 존속기간이 오래된 사업장 일수록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가 높았다.

5. 근로자 규모별 효과분석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고용효과 결과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브그룹(sub-group) 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실적으로 근로자 1인~4인의 영세사업장과 사업장 근로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혜금(사회보험료 지급분 등)을 지원 대상이어도 수혜금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수혜금(사회보험료 지급분 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

다.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정책도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브그룹(sub-group)을 근로자 1인~4인 사업장과 근로자 5인~9인 사업장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모형을 기준으로, 강원도 근로자 1인~4인 사업장에서 전국을 대조군으로 정한 경우에는 0.4%(수도권 대조군은 0.6%, 광역시 대조군은 1.2%)의 고용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지역 대조군은 일자리정책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모형 1(KTX) 기준으로 나타난 결과도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5> 근로자 1인~4인 사업장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039*** (0.001)	0.0038*** (0.001)	0.0040*** (0.001)	0.0059*** (0.001)	0.0025*** (0.001)	0.0060*** (0.001)
log(탑승자)		0.0000 (0.000)	-0.0003 (0.000)		0.0003*** (0.000)	-0.0003 (0.000)
관측치 수 (천개)	24,388			14,220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23*** (0.001)	0.0079*** (0.001)	0.0121*** (0.001)	-0.0042*** (0.001)	-0.0062*** (0.002)	-0.0086*** (0.001)
log(탑승자)		0.0003*** (0.000)	0.0004*** (0.000)		-0.0008*** (0.000)	0.0104 (0.001)
관측치 수 (천개)	12,507			12,578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마찬가지로, 기본모형을 기준 근로자 5인~9인 사업장에서 전국을 대조군으로 정한 경우에는 1.1%(수도권 대조군은 1.1%, 광역시 대조군은 2.0%)의 고용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지역 대조군은 0.2%의 일자리정책 고용효과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모형 1(KTX) 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고용효과가 1.4%~4.4% 정도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규모별 정책효과는 두 가지 처치군(근로자 1인~4인 사업장과 근로자 5인~9인 사업장)에서 정책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 5인~9인 사업장이 근로자 1인~4인 사업장보다 미세한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를 대조군으로 선정한 분석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처치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5.0%~10% 정도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근로자 5인~9인 사업장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전 국			수도권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108*** (0.004)	0.0150*** (0.004)	0.0103*** (0.004)	0.0109*** (0.004)	0.0138*** (0.004)	0.0108*** (0.004)
log(탑승자)		-0.0000*** (0.000)	0.0011 (0.000)		-0.0002 (0.000)	0.0003 (0.001)
관측치 수 (천개)	7,770			4,572		
대조군	광역시			도 지역		
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기본모형	통제모형 1	통제모형 2
정책더미	0.0203*** (0.004)	0.0200*** (0.004)	0.0198*** (0.004)	0.0019 (0.004)	0.0441*** (0.007)	-0.0066 (0.004)
log(탑승자)		0.00003 (0.000)	0.0014** (0.001)		-0.0032*** (0.000)	0.0209*** (0.005)
관측치 수 (천개)	3,862			4,108		

주: 1. 통계적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 ($p < 0.1$)

2. () : robust Standard Error

3. 통제모형 1(KTX), 통제모형 2(열차 합계)

6. 일자리 안심공제 효과분석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의 목표는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정책대상 근로자) 규모가 큰 경우에 변화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강원도 안심공제 수혜자는 3,000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여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고용효과를 파악하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본 연구의 신뢰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2020년 6월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을 기준으로 강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근로자)는 15만 9천 명으로 2019년 12월 기준 15만 5천 명보다 4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0년 6개월 동안 강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자는 6만 5천 명이고, 2019년 12개월 동안 상실자는 12만 2천 명으로 월 만 명 정도의 고용보험 상실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이 67.0%이고 강원도가 68.2%로, 전국이 강원도와 비교하여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강원도의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 비중이 전국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2010년~2016년까지 강원도의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 비중과 전국의 상실자 비중의 차이가 평균 6.1%p였다가,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그

격차가 평균 3.2%p로 감소하여, 강원도의 상실자 비중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강원도 고용보험 상실자를 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표 4-17>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 비중 및 격차

	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61.9	59.1	56.8	57.8	59.9	61.0	62.0	63.1	63.6	64.1	66.0	67.0
서울	46.7	43.6	41.3	41.6	44.3	45.5	46.6	48.3	48.6	49.8	51.7	52.7
부산	68.3	63.4	62.8	64.5	66.8	67.4	69.1	69.6	69.9	71.2	73.1	74.1
대구	69.6	68.3	64.7	67.0	67.4	69.1	70.4	72.5	72.1	70.5	71.7	71.1
인천	69.9	64.9	64.1	66.8	68.0	69.2	70.6	71.9	71.8	72.0	73.3	74.3
광주	70.2	68.0	67.5	68.3	69.5	70.1	70.2	70.3	71.1	69.9	72.7	75.6
대전	62.9	56.3	55.3	58.8	60.2	61.9	64.1	64.3	65.0	65.2	69.0	70.1
울산	64.7	68.0	63.1	63.1	63.8	64.9	64.0	63.3	61.3	66.2	68.2	68.9
세종	70.0	63.1	59.4	63.5	71.3	63.6	66.9	72.3	72.1	71.3	75.6	72.8
경기	69.9	67.2	64.7	66.7	67.3	68.8	70.2	71.7	72.1	71.4	73.6	74.5
강원	66.9	68.2	65.1	63.7	66.8	66.8	66.1	65.4	68.6	68.4	68.2	68.2
충북	67.2	65.3	62.0	62.9	65.9	67.1	69.0	69.2	69.9	66.4	69.9	70.7
충남	69.5	66.6	63.8	63.0	67.4	67.7	69.7	71.9	72.1	72.4	73.9	74.1
전북	70.3	68.2	67.5	68.3	70.6	70.3	69.5	71.2	71.9	70.9	71.5	72.6
전남	69.6	68.5	67.6	69.1	69.0	68.9	68.8	70.8	72.6	70.7	68.5	70.4
경북	69.2	66.5	63.8	65.0	68.6	68.0	68.4	70.2	71.6	72.1	73.4	74.5
경남	68.6	67.3	66.1	66.3	68.4	68.6	68.9	66.4	67.7	70.8	72.9	72.2
제주	83.4	82.8	81.3	81.8	83.0	82.8	82.6	82.2	81.5	84.9	85.8	87.1
(전국 - 강원)	5.0	9.2	8.3	5.9	6.9	5.9	4.1	2.3	5.0	4.3	2.2	1.2

자료 : 통계청 행정자료(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수혜자는 5년 이상의 장기 재직으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피보험자(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월)은 증가할 것이고, 상실자도 평균 재직 기간(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의 도표를 작성하였다.

2010년~2020년까지 전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평균 재직 기간(월)은 36.2개월이고, 강원도 근로자의 재직 기간은 36.1개월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0.1개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2016년까지 전국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5.0개월이고 강원도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5.5개월로 강원도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0.5개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이 시작되는 2017년~2020년까지 전국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7.7개월

로 나타났고, 강원도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6.8개월로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에 강원도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0.9개월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강원도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평균 재직 기간(월)

	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6.2	33.6	34.0	34.3	35.1	35.8	35.8	36.2	37.1	37.4	38.1	38.4
서울	36.7	34.4	34.8	35.1	35.9	36.4	36.5	36.7	37.6	37.7	38.2	38.8
부산	37.7	35.6	35.6	36.0	36.4	36.8	36.8	37.5	38.6	39.2	39.9	40.4
대구	38.1	35.9	35.9	36.1	36.9	37.7	37.6	38.0	38.9	39.1	40.1	41.0
인천	36.4	34.8	35.1	35.0	35.6	36.0	36.1	36.2	37.2	37.2	37.9	38.0
광주	34.4	31.6	32.1	32.0	33.2	33.7	33.9	34.7	35.7	35.9	36.4	36.4
대전	34.3	31.9	32.5	32.7	33.6	34.1	34.3	34.7	35.8	35.4	35.5	35.3
울산	35.7	32.9	33.1	33.2	34.2	34.5	34.4	35.5	37.4	37.7	38.7	39.0
세종	28.5	34.1	34.1	32.5	31.4	30.0	28.7	28.2	27.5	26.7	26.4	26.4
경기	35.1	32.3	32.7	33.2	34.0	34.7	34.9	35.1	35.7	36.1	37.1	37.6
강원	36.1	34.1	34.6	35.1	36.0	36.2	36.0	36.4	36.9	36.8	37.0	36.6
충북	37.2	34.0	34.6	35.1	36.0	36.9	36.8	37.7	38.7	39.0	39.7	38.2
충남	35.2	32.5	32.8	33.4	34.6	35.6	35.2	35.4	35.7	36.4	37.1	36.6
전북	36.0	33.0	33.9	34.3	34.9	35.5	35.6	36.4	37.5	37.6	38.0	37.7
전남	36.4	33.7	34.2	33.7	35.0	36.1	36.1	36.9	37.7	38.2	38.6	38.3
경북	37.5	33.7	34.2	34.6	35.4	36.7	37.1	37.9	38.8	39.6	40.5	41.0
경남	37.0	32.9	33.3	34.0	35.0	35.9	36.3	37.4	39.0	39.7	40.3	40.8
제주	34.7	34.9	35.2	34.9	35.3	35.5	34.8	33.3	33.5	33.9	34.9	36.0
(전국 - 강원)	0.1	-0.5	-0.6	-0.8	-0.9	-0.4	-0.1	-0.1	0.2	0.6	1.1	1.8

자료 : 통계청 행정자료(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

고용보험 상실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2020년까지 전국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월)은 16.4개월이고, 강원도의 고용보험 상실자 재직 기간은 15.2개월로 강원도 상실자의 재직 기간이 1.2개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보험자(근로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2016년까지 전국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6.2개월이고 강원도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5.0개월로 강원도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0.2개월 더 짧고,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이 시작되는 2017년~2020년까지 전국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7.0개월이고, 강원도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5.8개월로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전·후 모두 강원도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1.2개월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강원도 고용보험 상실자의 평균 재직 기간은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9> 고용보험 상실자 평균 근무 기간(월)

	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6.4	16.2	16.0	16.1	15.7	16.0	16.4	16.7	16.4	16.8	16.5	18.3
서울	16.7	17.6	17.5	16.4	16.2	16.5	16.6	16.6	16.3	16.6	16.2	17.6
부산	16.5	16.7	15.8	15.8	15.8	16.1	16.4	16.1	16.8	17.0	16.9	18.0
대구	16.4	16.0	15.2	15.5	15.6	15.6	16.3	16.6	16.6	17.4	17.3	19.0
인천	16.1	17.1	15.8	16.2	15.5	15.5	15.8	15.8	15.6	16.2	15.9	18.2
광주	15.2	15.2	14.5	14.1	14.4	14.7	15.2	15.3	15.4	16.1	15.4	16.6
대전	16.5	17.1	16.6	15.9	15.5	15.6	16.0	16.2	17.0	17.3	16.9	17.9
울산	18.0	17.8	16.2	14.7	16.2	15.8	16.7	17.7	18.6	20.3	20.5	27.0
세종	14.4	18.0	16.9	16.0	15.2	16.2	15.8	13.5	13.8	13.3	12.7	14.9
경기	16.8	15.4	15.8	17.3	16.0	16.5	17.0	17.8	16.8	17.0	16.7	18.1
강원	15.2	15.0	15.0	14.8	14.6	14.7	15.2	15.6	15.3	15.5	15.2	17.0
충북	16.1	15.1	15.0	15.0	15.3	15.5	16.9	16.1	16.2	16.6	16.0	19.9
충남	15.6	15.6	13.9	14.1	14.8	15.7	15.9	15.5	15.2	16.0	16.3	18.3
전북	16.7	15.7	15.4	15.3	16.6	16.4	16.7	16.0	16.7	18.7	16.5	19.5
전남	16.2	15.5	15.3	17.0	15.2	16.1	15.7	16.9	16.1	16.5	16.3	17.5
경북	16.3	15.9	15.0	15.4	14.8	15.4	16.3	17.0	16.7	17.1	17.5	19.0
경남	16.0	15.1	14.9	15.3	14.8	15.0	15.9	16.7	16.2	17.3	16.8	18.4
제주	15.9	15.8	17.6	16.8	15.8	15.9	16.5	17.2	15.3	14.9	14.3	17.2
(전국 - 강원)	1.2	1.2	1.0	1.3	1.1	1.3	1.3	1.1	1.1	1.3	1.3	1.3

자료 : 통계청 행정자료(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

제 5 장

결 론

강원도 일자리정책 지원사업(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0.2%~1.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 특성과 이질성 검토를 위하여 서브그룹(sub-group)을 선정하고 고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이 작은 사업장보다 안정적이어서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제조업·건설업이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보다 고용효과가 높고, 존속사업장이 2015년 이후 신규사업장보다 고용효과가 높으며, 근로자 5인~9인의 사업장이 근로자 1인~4인의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도 일자리정책의 인과관계 검토를 위하여 처치군을 강원도 경계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조군을 처치군의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시·군단계의 분석에서는 인접 시·군 간의 교통 편의성 및 이동 용이성 등의 여부에 따라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권역별(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인접한 강원도 권역을 처치군으로 선정) 분석 결과와 강원도 인접지역 20개를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고용효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일자리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주민(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일자리 지원정책의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정책일수록 혜택을 받는 주민(도민)도 그만큼 많아져야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일자리 지원정책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혜택을 받는 주민도 소수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 일자리정책 지원사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전체적으로 0.2%~1.0% 정도로 나타났고, 수혜자도 30,000명 이상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정책의 추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보

험 자료에서 ① 강원도의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② 상실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연도별 평균 근무 개월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평균 근무 개월의 증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은 해당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책 수혜자인 계약유지 인원 5,461명은 2020년 기준 강원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29만 명 대비 1.9%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원만큼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희 외 3인. (2014). **정부 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미시적 분석방법론**.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김난영. (2019).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3호**. 147~167.
-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통권 75호**.
- 성재민 외 2인. (20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 외 3인. (20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 외 2인. (2016).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제64집 제1호**.
- 우광호. (2015).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 윤윤규 외 5인. (2012). **노동시장정책 평가방법론 및 다부문 거시산업모형 DB 구축**. 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 (2016).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시사점. **KDI FOCUS, 통권 73호**.
- 윤희숙 외. (2016.).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KDI.
- 이병희 외 5인. (2014).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용하 외 2인. (2015).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가요인 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연구원.
- 홍우형. (2017). 수도권 휘발유 시장에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 효과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5집 제2호**.

<자료>

- 통계청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자료, 2010년~2020(1/2))
- 통계청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 2010년~2020(1/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강원도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강원도청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역별 여객 승하차 실적

부 록

부록1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대분류	설 명
T	전체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부록2
관광산업(관광 핵심산업)

산업분류	설 명	산업분류	설 명
47130	면세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7842	기념·관광 및 장식용품 소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49101	철도 여객운송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5102	여관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55104	민박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55109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129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471*	종합 소매업
75210	여행사업	5611*	한식 음식점업
75290	기타 여행 및 예약 서비스업	5612*	외국식 음식점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5621*	주점업

부록3

(고용보험) 지역별 피보험자 현황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0,129	10,675	11,152	11,571	11,913	12,346	12,637	12,941	13,413	13,841	13,899
서울	3,461	3,630	3,785	3,897	3,995	4,130	4,236	4,339	4,476	4,571	4,529
부산	557	585	606	629	653	677	678	686	701	719	718
대구	338	355	374	389	403	420	432	442	454	467	469
인천	436	458	474	491	508	526	542	560	584	602	609
광주	202	209	221	229	241	252	262	270	283	293	298
대전	252	289	302	314	326	341	348	355	376	393	399
울산	258	268	285	298	308	313	303	289	290	298	300
세종	19	21	22	24	26	30	32	36	42	48	50
경기	2,046	2,217	2,332	2,436	2,515	2,619	2,725	2,827	2,957	3,077	3,118
강원	204	211	222	230	235	244	251	259	271	285	292
충북	272	283	294	304	313	328	335	345	359	377	382
충남	384	389	404	422	431	447	455	472	489	507	513
전북	257	267	282	294	299	310	317	322	335	350	355
전남	269	280	287	296	297	309	316	321	341	362	372
경북	479	484	501	522	537	547	552	567	579	593	595
경남	617	645	673	700	725	744	734	721	739	758	759
제주	78	84	89	96	102	110	120	129	136	142	141

부록4

(고용보험) 지역별 사업장 현황 (천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940	991	1,069	1,130	1,179	1,268	1,309	1,339	1,384	1,434	1,473
서울	247.7	259.9	277.7	287.8	297.2	316.6	323.1	328.1	337.4	345.7	352.0
부산	61.2	64.5	69.7	74.6	77.8	83.3	85.4	87.2	89.1	91.8	94.1
대구	40.6	43.1	46.7	50.3	52.9	57.5	59.7	61.1	62.6	64.5	65.7
인천	47.2	50.0	53.4	57.0	60.0	64.4	64.9	66.8	69.6	72.0	74.0
광주	22.4	23.6	25.7	27.1	28.7	31.3	32.8	33.9	35.3	36.8	38.1
대전	23.6	24.8	26.7	28.5	29.9	32.6	33.6	34.7	36.0	37.7	39.2
울산	16.5	17.4	19.0	20.2	21.2	22.6	23.4	23.8	24.5	25.4	26.4
세종	1.5	1.6	1.8	2.3	2.7	3.5	4.1	4.8	5.5	6.1	6.5
경기	224.5	237.5	257.4	274.5	288.1	311.8	324.8	331.6	347.9	362.6	374.3
강원	25.3	26.7	29.1	30.6	31.6	33.7	35.2	35.9	36.7	38.3	39.8
충북	26.4	27.5	29.8	31.2	32.6	35.3	37.1	38.2	39.5	41.4	42.5
충남	32.8	35.3	38.2	40.8	42.8	46.5	47.2	49.2	50.6	52.7	54.1
전북	29.9	30.8	33.6	36.0	37.3	40.3	41.4	42.3	43.1	44.9	46.2
전남	28.5	29.5	31.7	33.6	34.3	36.9	38.5	39.7	40.6	42.9	44.2
경북	44.2	46.6	50.3	53.7	55.8	60.0	61.6	62.9	64.0	65.6	67.4
경남	57.9	61.4	66.3	69.6	71.8	76.8	78.6	79.5	80.9	84.1	86.7
제주	9.7	10.4	11.8	12.8	14.0	15.3	17.8	19.1	20.3	21.2	21.4

부록5

(고용보험) 2018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수(개)¹⁾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TOT	1,062,163	262,821	67,341	49,674	53,698	27,427	28,080	17,599	4,209
A	5,232	80	101	35	64	25	54	44	24
B	368	30	6	3	2	7	5	5	4
C	181,365	24,149	11,600	11,211	12,073	3,509	3,383	2,567	458
D	802	80	25	26	14	51	18	11	2
E	3,936	128	188	200	240	90	79	90	20
F	83,180	12,808	4,478	3,335	3,510	2,716	2,245	1,792	369
G	283,895	78,840	19,023	13,484	13,622	7,974	8,012	4,293	755
H	22,717	3,986	2,425	911	1,816	561	451	584	98
I	138,620	35,312	9,066	5,987	7,261	3,188	3,959	2,468	827
J	24,802	14,892	827	646	599	397	558	154	79
K	5,318	2,493	355	275	206	170	148	57	10
L	49,659	17,758	3,338	1,849	2,139	1,326	1,210	877	330
M	65,762	28,018	3,679	2,540	2,418	1,647	1,724	936	202
N	31,347	8,526	2,047	1,163	1,563	760	723	650	148
O	402	1			6	1			1
P	29,380	5,815	1,845	1,521	1,356	880	1,008	578	161
Q	94,712	20,037	5,975	4,709	4,730	3,054	3,400	1,717	531
R	10,880	3,146	651	435	554	237	236	160	64
S	29,753	6,718	1,710	1,344	1,523	833	865	615	126
T	33	4	2		2	1	2	1	

1) 고용보험 자료를 국민연금 자료와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연계 사업장이 발생함

부록5

(고용보험) 2018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수(개) - 계속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TOT	273,475	28,275	29,099	37,618	32,958	30,053	47,786	57,612	14,438
A	828	486	298	581	429	756	589	548	290
B	28	64	28	26	26	30	71	29	4
C	67,099	2,276	5,134	6,459	3,994	3,706	10,181	12,771	795
D	90	46	26	66	67	103	93	57	27
E	1,094	186	210	231	174	213	427	320	46
F	17,311	3,741	3,580	4,204	4,243	4,792	6,347	5,757	1,952
G	70,638	7,177	7,276	8,970	8,418	7,432	11,007	13,476	3,498
H	4,834	568	773	849	800	1,165	1,305	1,332	259
I	33,179	5,085	3,677	4,995	4,224	3,235	5,433	7,385	3,339
J	4,495	292	224	310	256	216	323	360	174
K	677	114	107	100	125	94	159	164	64
L	11,602	1,135	986	1,361	1,261	829	1,218	1,776	664
M	12,732	1,349	1,297	1,656	1,706	1,306	1,725	2,255	572
N	8,133	761	920	1,209	712	621	1,194	1,649	568
O	18	22	36	55	50	100	67	45	
P	6,551	1,101	790	1,234	1,482	1,148	1,515	1,866	529
Q	23,237	2,570	2,684	3,912	3,567	3,229	4,471	5,766	1,123
R	2,890	330	246	339	295	208	398	495	196
S	8,026	972	807	1,061	1,128	869	1,259	1,559	338
T	13				1	1	4	2	

부록6

(국민연금) 산업대분류별 연도별 사업장 변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	8,770	9,279	9,675	-	10,162	10,551	10,987	11,285	11,662	12,012	11,996
A	19.6	21.0	22.8	-	26.0	28.7	31.0	32.6	34.2	34.9	35.9
B	11.4	10.8	10.5	-	10.2	9.5	9.3	8.8	8.5	8.0	7.9
C	2,967.5	3,110.0	3,186.7	-	3,281.6	3,321.0	3,374.7	3,421.2	3,435.2	3,435.4	3,384.9
D	58.9	60.5	62.8	-	68.0	70.5	73.3	75.1	78.9	81.0	80.8
E	50.9	52.1	51.8	-	50.6	50.3	50.8	51.5	51.4	53.1	53.7
F	702.1	710.9	720.2	-	714.0	729.6	768.9	804.2	836.7	925.4	946.6
G	1,109.3	1,238.9	1,341.4	-	1,514.6	1,642.5	1,759.9	1,832.7	1,925.0	1,982.3	1,981.5
H	443.9	452.5	452.8	-	450.9	451.3	459.1	464.7	476.6	493.9	491.7
I	215.5	248.3	301.4	-	395.7	490.7	554.8	583.9	643.0	696.9	673.3
J	445.1	476.1	499.1	-	511.3	521.5	545.9	566.2	602.4	621.0	627.6
K	410.1	422.1	433.1	-	429.2	427.2	430.3	430.6	441.8	450.4	448.3
L	403.9	421.7	442.0	-	461.5	478.3	495.8	502.4	515.7	521.5	554.5
M	554.5	584.7	608.5	-	645.8	676.5	718.7	747.2	781.3	816.1	828.2
N	595.2	624.1	636.3	-	627.4	640.3	667.2	671.9	676.6	676.4	658.7
O	-	-	-	-	-	-	-	-	-	-	0.0
P	76.7	79.4	86.3	-	91.8	98.7	108.2	114.6	124.1	134.8	134.7
Q	502.6	545.2	579.8	-	621.9	642.2	650.9	679.4	711.5	750.1	758.7
R	56.0	60.4	64.2	-	68.0	73.7	80.2	85.5	98.3	103.7	102.2
S	146.9	160.6	174.8	-	192.5	198.0	207.9	212.6	220.3	226.0	224.2
T	0.2	0.3	0.5	-	0.5	0.5	0.5	0.4	0.4	0.5	0.5

부록7

(국민연금) 산업대분류별 연도별 가입자 변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	21.28	22.46	24.13	-	27.59	30.43	33.36	35.30	37.51	39.91	41.20
A	0.29	0.32	0.38	-	0.44	0.51	0.58	0.62	0.67	0.69	0.77
B	0.15	0.14	0.13	-	0.11	0.11	0.11	0.12	0.12	0.11	0.11
C	2.32	2.40	2.56	-	2.81	3.01	3.23	3.34	3.52	3.65	3.72
D	0.02	0.02	0.02	-	0.03	0.03	0.04	0.05	0.07	0.08	0.08
E	0.24	0.24	0.24	-	0.23	0.23	0.25	0.25	0.26	0.28	0.29
F	4.32	4.43	4.54	-	4.81	5.01	5.44	5.63	6.00	6.74	7.05
G	5.15	5.53	6.11	-	7.05	7.90	8.59	9.05	9.51	9.86	9.99
H	0.62	0.63	0.66	-	0.72	0.78	0.81	0.85	0.90	0.90	0.92
I	1.74	1.94	2.43	-	3.74	4.67	5.41	5.90	6.56	7.22	7.40
J	0.27	0.28	0.29	-	0.32	0.34	0.39	0.42	0.48	0.51	0.52
K	0.24	0.24	0.24	-	0.24	0.24	0.26	0.27	0.28	0.28	0.29
L	1.26	1.38	1.49	-	1.58	1.68	1.87	2.06	2.05	2.14	2.51
M	1.16	1.23	1.27	-	1.40	1.49	1.61	1.74	1.84	1.94	1.99
N	0.72	0.77	0.77	-	0.81	0.89	0.98	1.06	1.08	1.15	1.19
O	-	-	-	-	-	-	-	-	-	-	-
P	0.45	0.46	0.48	-	0.56	0.61	0.65	0.70	0.80	0.88	0.89
Q	1.37	1.41	1.43	-	1.45	1.48	1.50	1.53	1.56	1.58	1.59
R	0.17	0.19	0.20	-	0.24	0.31	0.39	0.43	0.47	0.53	0.54
S	0.81	0.84	0.89	-	1.06	1.14	1.25	1.28	1.34	1.37	1.35
T	0.00	0.00	-	-	0.00	0.00	-	-	-	-	-

부록8

(고용보험) 2018년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수(개)

구 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전국	264,545	81,459	51,974	37,253	27,473	20,481	15,930	12,654	9,717	7,604
서울	36,957	12,955	7,391	4,894	3,486	2,446	1,986	1,625	1,204	970
부산	16,078	5,282	3,066	2,196	1,685	1,231	920	716	558	424
대구	14,546	4,612	2,959	2,085	1,456	1,035	847	668	502	382
인천	15,583	4,855	2,977	2,200	1,602	1,143	999	732	607	468
광주	6,225	1,805	1,267	917	716	503	386	296	195	140
대전	5,628	1,712	1,100	827	591	465	325	250	213	145
울산	4,359	1,313	844	586	477	328	268	225	185	133
세종	827	221	170	120	103	68	57	38	27	23
경기	84,410	26,878	16,754	11,661	8,474	6,425	4,805	3,966	3,042	2,405
강원	6,017	1,540	1,140	917	707	543	423	306	245	196
충북	8,714	2,377	1,643	1,278	912	766	594	479	363	302
충남	10,663	3,004	2,062	1,549	1,158	863	674	554	453	346
전북	8,237	2,173	1,650	1,234	983	712	558	393	300	234
전남	8,498	2,100	1,586	1,281	984	774	643	499	349	282
경북	16,528	4,478	3,187	2,503	1,878	1,393	1,040	850	687	512
경남	18,528	5,489	3,693	2,606	1,922	1,528	1,171	886	681	552
제주	2,747	665	485	399	339	258	234	171	106	90

부록9

(고용보험) 2018년 서비스업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수(개)

구 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전국	609,957	249,389	128,083	78,946	51,775	35,425	24,334	17,548	13,670	10,787
서울	153,854	62,699	33,169	19,890	12,584	8,647	6,193	4,488	3,411	2,773
부산	40,695	16,781	8,674	5,292	3,493	2,222	1,525	1,072	877	759
대구	28,391	12,163	5,938	3,678	2,305	1,484	1,015	754	604	450
인천	30,862	12,674	6,309	3,815	2,856	1,837	1,223	897	696	555
광주	16,727	6,776	3,545	2,288	1,525	944	622	413	349	265
대전	17,931	7,157	3,899	2,273	1,656	1,091	695	495	356	309
울산	10,415	4,116	2,166	1,477	946	555	410	292	270	183
세종	2,562	1,036	455	340	234	196	105	76	70	50
경기	149,355	59,776	30,820	19,380	12,961	9,497	6,346	4,514	3,430	2,631
강원	17,803	7,572	3,889	2,288	1,459	913	608	447	362	265
충북	16,253	6,961	3,319	2,092	1,301	880	598	433	384	285
충남	21,360	8,746	4,310	2,623	1,768	1,380	960	661	511	401
전북	19,914	8,217	4,111	2,679	1,702	1,088	798	564	423	332
전남	17,286	6,920	3,575	2,309	1,498	1,011	693	517	428	335
경북	25,388	10,748	5,132	3,218	2,055	1,414	992	746	608	475
경남	31,879	13,388	6,521	4,058	2,702	1,823	1,203	921	691	572
제주	9,282	3,659	2,251	1,246	730	443	348	258	200	147

집필진

- 이동수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소장)
- 권태구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1-09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효과 분석 방안 -강원도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중심으로 -

발 행 2022년 4월 13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김진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통계청
통계개발원